
2020~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

2020. 1.



목 차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I.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개요 | 1 |
| II. '15~'19년 동물복지 종합계획 평가 | 4 |
| III. 동물복지 종합계획 방향 | 7 |
| IV. 과제별 추진 방안 | 11 |
| V. 실천 계획 | 23 |
| ※. 붙임 : 과제별 세부 추진 계획 | 25 |

I.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개요

1 계획의 수립배경 및 의의

◆ 그간의 동물보호·복지정책 성과를 평가하고 국민의식수준 변화에 따른 중장기 비전과 정책방향 제시

- 동물의 적절한 보호·관리를 위해 「동물보호법」 제4조에 따른 동물복지종합계획('20~'24) 수립 필요
 - '12년 「동물보호법」 전부개정으로 5년마다 동물복지종합계획 수립이 의무화 되었으며, '15~'19년 종합계획 이후 금번 계획은 두 번째 계획
 - ※ '08년 동물보호·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나, 법정 의무계획은 아님
- 사회·경제 발전 등에 따라 변화된 국민 인식, 정책 수요를 고려하여 중장기 정책 방향을 새로이 마련
 - 지난 5개년 동물복지종합계획('15~'19), 그간 현안 해결을 위해 마련한 대책* 및 제도개선의 효과와 개선점을 토대로 정책방향 마련
 - * ('16) 반려동물산업육성 대책, ('17) 동물복지형 축산 기준(안) 마련, ('18)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, ('19) 동물복지형 축산 기준 마련, 동물등록제 개선방안, 검역탐지견 복제연구 관련 개선 방안 등
- 동물보호·복지 정책 중장기 방향 제시를 통해 국민적 인식 변화 유도 및 성숙한 동물 문화 조성 추진
 - 국민 인식 개선, 반려동물 문화 개선, 농장·실험동물 복지수준 제고, 정책 거버넌스 강화 등 분야 별 중장기 개선 방안 도출

2 계획의 범위와 성격

- (계획의 범위) 「동물보호법」 제4조에 따른 사항과 그간 동물 보호·복지 관련 다양한 제기사항 포함

< 「동물보호법」 제4조에 따른 동물복지 종합계획 포함 사항 >

1.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침
2. 유실·유기동물, 피학대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
3. 동물실험시행기관 및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
4. 동물학대 방지, 동물복지, 유실·유기동물의 입양 및 동물실험윤리 등의 교육·홍보에 관한 사항
5. 동물복지 축산의 확대와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동물학대 방지와 반려동물 운동·휴식시설 등 동물복지에 필요한 사항

- (공간/시간적 범위) 전국/2020~2024년
- (적용범위) 농림축산식품부, 관계부처(행안부, 소방청, 환경부, 해수부, 식약처, 농촌진흥청 등), 지자체(시·도/시·군), 관련단체 및 일반국민 등

- (계획의 성격) 「동물보호법」에 따른 법정 계획이며, 광역 시·도는 해당 계획에 따라 동물복지계획 수립

- 국가와 지자체는 해당 계획에 따른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인력·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

- (계획수립 체계) 주요 과제별로 관련부처, 전문가, 유관단체가 참여하는 T/F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고, 동물복지위원회 자문을 거쳐 확정

3 계획 수립 추진 경과

- 동물복지 종합계획 논의 골격 마련을 위해 그간 제기된 사안을 중심으로 동물보호·복지 주요 정책방향 우선 수립('19.6월)
 - 관련단체·지자체 협의회, 동물복지위원회 논의, 국회 토론회 등 의견수렴 ('19.1~'19.6. 12회) 등을 통해 6대 분야* 21대 동물보호·복지 정책 과제 도출
 - * ①동물 소유자 인식 개선, ②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, ③유기·피학대 동물 보호, ④농장동물의 복지 개선, ⑤동물실험 3R 원칙 구현, ⑥동물보호·복지 거버넌스 강화
- 주요정책 방향 6대 분야 별로 과제별 T/F 구성 및 운영('19.8~12월)
 - 관계부처, 전문가, 유관단체 등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하여 반별 3회 내외 운영
 - * 관계부처(행안부, 경찰청, 소방청, 환경부, 해수부, 식약처, 농진청), 지자체, 학계, 동물보호단체, 생산자단체 등 67개 기관 70명 참여
-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 추진('19.9~12)
 - 반려동물 양육 여부, 주요 정책별 국민 인식 등 5,000명 대상 설문조사 수행
 - 반려동물 사육 여부, 동물학대 처벌 수준, 지자체 동물보호 전담 인력 충원 필요성 등 정책방향 등에 관한 설문 수행
- 동물복지위원회 자문 등 의견수렴('19.12)
 - 동물복지위원회를 통해 종합계획 자문 추진('19.12.19, '19.12.27)

Ⅱ. `15~`19년 동물복지 종합계획 평가

1 `15~`19년 동물복지 종합계획 개요

◆ 「동물보호법」 제정('91) 이후 첫 법정계획으로 그간 관련 단체, 지자체 등의 정책수요를 수렴하여 반영

□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등 4개 분야, 12대 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성

< `15~`19년 동물복지 종합계획 분야 별 세부 과제 개요 >

| 4대 분야 | 12대 과제 | 세부 과제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|
| 1.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| ① 동물소유자 책임 강화 | • 동물등록 방식 내장형 일원화, 동물유기·안전관리 미이행 처벌강화 등 |
| | ② 유기·유실동물 관리 강화 | •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설치·운영비 지원, 사설동물보호시설 단계적 축소 등 |
| | ③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관리·육성 | • 생산업 입지제한 완화, 이력제 도입, 서비스업 신설 등 |
| | ④ 인도적인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 | •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국비 지원 등 |
| 2. 한국형 농장동물 복지체계 구축 | ⑤ 축종별 최소 복지기준 마련 | • 보편적 동물복지 기준 마련, 동물복지형 도축장, 운송차량 지원, 도축장 준수 의무 마련 등 |
| | ⑥ 동물복지 인증제 확대 | • 인증 축종 확대, 직불금 도입, 인증 범위를 농가에서 운송·도축으로 확대 등 |
| 3. 동물실험의 윤리성 제고 | ⑦ 국가공통 동물실험지침 마련 | • 국가 공통 동물실험지침 제정, 실험동물관리 전문인력 양성, 동물복지실험기관 지정 |
| | ⑧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내실화 | • 윤리위원 보수교육 의무화, 승인 후 감독 기능 부여 등 |
| | ⑨ 불필요한 동물실험 금지 | • 화장품 등 동물실험 단계적 제한, 초중고교 동물실험 원칙적 금지 등 |
| 4. 추진체계 및 R&D | ⑩ 추진기반 정비 | • 농식품부 내 동물복지과 신설, 동물보호경찰 도입, 영업자 등 대상 온라인 교육 과정 운영 |
| | ⑪ 정책기반 공고화 | • 학교 교육과정에 동물보호 교육 포함, 반려동물 소유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|
| | ⑫ 연구개발 강화 | • 관계기관 합동 R&D 기획단 구성·운영 등 |

- (주요성과)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 체계화 등 반려 동물 관련 정책에서 상당한 성과
 - (반려동물) 미용업 등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업 4종* 등록제 도입('18.3), 소유자 준수사항에 대한 처벌** 및 홍보 강화***
 - * ('17) 생산·판매·수입·장묘업 → ('18) 미용·위탁관리·운송·전시업 추가
 - ** (동물유기) (1차) 30만원, (2차) 50, (3차) 100 → 100, 200, 300
(안전관리) (1차) 5만원, (2차) 7, (3차) 10 → 20, 30, 50
 - *** 소유자 준수사항에 대한 현장 지도를 정례화('18), TV 공익광고 실시('19),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('19) 등
 - '08~'18년까지 누적 등록마릿수(1,304천마리)의 55%에 달하는 72만마리가 '19년 한해 신규 등록('19.10월 기준)
 - 유기동물 보호 여건 개선을 위해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지속 확충*하고, 유기동물 입양지원, 구조·보호비 등 운영비 신규 지원**('18~)
 - *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 현황(개소) : ('14) 25 → ('16) 31 → ('18) 43
 - ** 길고양이 종성화, 유기동물 입양, 구조·보호비 등(백만원) : ('18) 1,536 → ('19) 2,296
 - (농장) 모든 축산농가가 준수해야할 동물복지 기준 마련('19)
 - 산란계 강제털갈이·임신돈 스톨사육 제한 등 농장동물 복지 개선방안 마련
 - * 산란계 사육밀도 완화(0.05㎡/마리→0.075) '18.9월 시행
 - 동물복지 인증 대상 축종을 기존 산란계, 돼지에서 육계('14), 한·육우, 젓소, 염소('15), 오리('16)로 확대
 - (동물실험)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(원료) 유통 판매 제한('16), 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 제한 근거 마련('18.3월)
 - (추진체계) '18.6월 농식품부내 과단위 동물복지정책팀 신설

- (반성) 실행 가능성 고려 부족 · 관계부처 이견 등으로 추진하지 못한 과제가 있으며, 동물학대 방지 등 주요과제는 미포함
- (실행 가능성) 국민인식, 행정여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계획 일부 미이행

< 실행가능성 고려가 부족했던 주요 계획 >

- ◇ (사설보호소 축소) 유기동물 발생이 지속 증가하고 있고, 지자체 보호여건은 한정적인 상황에서 유기동물 일부를 보호 중인 사설보호소 축소는 사실상 어려움
- ◇ (내장형 일원화) 동물등록 방식을 내장형으로 일원화 계획을 수립했으나, 동물등록이 활성화되지 않은 여건에서 소유자 부담이 큰 내장형 일원화는 동물등록 참여를 오히려 저해시킬 우려가 있어 미추진
- ◇ (동물복지 인증확대) 운송차량, 도축장으로 인증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으나, 검역본부 인력 부족으로 시행하지 못함
 - 오히려 농식품부 인력 확충을 위해 검역본부 인력을 줄이겠다는 계획이 포함

- (관계부처 이견) 반려동물 생산업,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입지제한 완화 등은 환경부 · 국토부 이견으로 미추진
- (계획부재) 「동물보호법」의 목적 중 하나가 동물학대 등의 금지임에도 관련 정책방향이 종합계획에 포함되지 않음
- (현안집중) 동물학대, 개물림 사고, 농장동물 복지 관심 급증 등 현안에 집중하여 동물실험, R&D 분야 등 일부 과제는 추진 미흡

< 주요 현안 >

- ◇ '16.5월 비위생적이고 좁은 환경에서 발정유도제, 불법 마약류 등을 사용하는 생산농가가 방송되며 국민적 공분 ⇒ '18.3월 생산업 허가제 전환, 동물학대에 신체적 고통 포함 등
- ◇ '17.8월 살충제 계란 사태를 계기로 농장동물 복지 수준 개선 요구 촉발 ⇒ '17.12월 동물복지형 축산기준 초안 마련, '19.6월 기준 최종안 마련
- ◇ '17.8월 연예인이 기르던 개에게 물린 이웃주민 사망으로 목줄 등 안전조치 강화 · 대형견 관리강화 요구 폭증 ⇒ '18.1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마련

Ⅲ. 동물복지 종합계획 방향

1 정책 여건

- 반려·농장·실험동물 사육 또는 사용이 지속 증가*하고 있고, 동물보호·복지에 대한 국민 관심도 증가**

* 전체 가구 중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율(%) : ('10) 17.4 → ('15) 21.8 → ('19) 26.4
사용된 실험동물 마리수(천마리) : ('11) 1,439 → ('14) 2,412 → ('18) 3,727

** (국민의식조사) 동물학대 목격 시 그냥 지나친다는 답변 비율 : ('15) 43.8% → ('19) 21.8

- (반려동물) 반려동물 보유가구 증가와 함께 관련 산업도 지속 성장* 중이나, 동물학대·유기 등 부작용**도 증가

* 반려동물 산업 규모(조원, KREI) : ('16) 21 → ('18) 27 → ('20) 3.4 → ('22) 4.2 → ('26) 5.7

** 동물유기·유실 발생건수 : ('16) 89,732마리 → ('17) 102,593 → ('18) 121,007
개 물림 사고 현황(소방청) : ('16) 2,111명 → ('17) 2,404 → ('18) 2,368

- (농장동물) 동물복지축산 인증제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는 지속 상승 중이나 생산자는 아직까지 관행축산이 익숙

* 산란계, 돼지, 육계, 젓소, 한·육우, 염소, 오리 농가를 대상으로 인증 중 ('18년 기준 198개소)

- (실험동물) 바이오산업 발전 등으로 동물실험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, 비교적 고통이 심한 실험이 대다수

* '17년 기준 고통등급 D(고통과 억압을 동반하나 마취 등 고통을 경감시키는 실험), E(고통 경감 없이 고통과 억압을 동반하는 실험)에 해당하는 실험에 사용된 동물 비중이 66%

- (거버넌스) 중앙정부(제도·정책 운영), 지자체(집행·점검), 동물보호단체(정책 모니터링) 3개 축으로 구성

-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자문기구로 동물복지위원회*를 운영 중

*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, 동물복지종합계획, 동물복지축산, 동물실험, 동물 학대방지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자문

2 문제점

◆ 동물의 사용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, 동물보호·복지에 대한 인식, 관리 제도·인력은 부족

① (소유자 인식)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와 관리 제도가 아직 미흡

- 동물유기·학대 방지를 위해 책임감 있고 준비된 사람이 반려동물을 양육하여야 하나 관련 교육이 부족하고 제도도 보완 필요
 - 맹견 소유자 교육을 의무화(19.3) 하였으나, 다른 교육은 부족한 상황

⇒ 학대행위 범위 확대·명확화, 소유자 준수사항 강화, 동물보호·복지 교육 활성화 등을 통해 대민 인식 성숙 유도

② (반려동물 영업) 허가·등록된 영업자를 통한 유통체계 확립 미흡, 영업자의 동물 사육·취급 환경 개선 필요성 지속 제기

- 허가·등록을 받은 영업자가 아닌 경로로 반려동물이 상당수 유통되어 관리 사각지대 발생 및 동물복지 저해 우려
 - * 반려동물 구매 경로 추정('18년 국민의식 조사) : (지인 무료 분양) 44.7%, (펫샵) 23.2, (지인 유료분양) 16.9 (유기동물 입양 등 기타) 15.5
 - 반려동물 생산·판매업 사육환경 등에 대한 불신이 지속되고 있으며,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 부족

⇒ 반려동물 영업자를 통한 거래 질서를 확립, 불법 영업 철폐, 서비스 품질 개선을 통해 반려동물 관련영업 건강한 발전 모색

③ (유실·유기동물) 동물보호시설의 열악한 사육환경으로 인해 유실·유기동물의 재입양 활성화 저해

* '18년 유실·유기동물 처리현황 : (재입양) 27.6%, (자연사·안락사) 44.1

⇒ 동물보호시설의 관리를 강화하고, 지자체 동물구조·보호 전문성 제고

④ (농장동물) 비윤리적인 사육·도축 관행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

- EU 등 선진국은 농장동물에 대한 복지 기준을 강화하고 있고, 국민의 농장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*도 높아지고 있으나, 농가 인식은 여전히 부족

* ('19년 국민인식조사) 농장동물 복지 수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 57.4%

- 동물복지축산인증에 대한 수요는 커지고 있으나, 인증제는 초보적인 수준

* 검역본부 동물보호과 2명이 인증 중이며, 가공품을 포함한 축산물에 인증마크 표시를 허용하고 있으나, 제조·가공시설 등에 대한 관리 체계가 없음

⇒ 축산농가, 도축장 등이 준수해야할 동물복지 기준을 구체화하고,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축산농가 인식 전환 유도

⑤ (동물실험) 실험건수 증가 등으로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실험윤리성 제고를 위한 주요 관리 수단임에도 심의·감독 기능 저하

- 위원회 인력 부족으로 체계적인 심의가 어려우며, 심의 후 관리·감독에 대한 명확한 제도적 규율이 없는 상황

- 사역견 동물실험 등 부적절한 동물을 활용한 실험에 대한 제한 요구 지속

⇒ 동물실험시행기관 준수사항,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을 법률로 명확화하여, 동물실험 윤리성 제고

⑥ (거버넌스) 정책 수요 급증에도 정부의 인력, 지원체계가 부족하고, 중앙정부-지자체-동물보호단체 간 정책 네트워크 미흡

- 동물복지 관련 부처간 협업이 강조되고 있으나, 동물복지위원회의 기능과 위상 부족*, 관련 부처, 유관단체·협회 등의 참여 미흡

* 민간위원 10인으로 구성된 농식품부장관 자문기구이며, 야생·수생동물 관련 사항이 자문범위에 미포함

- 제도 활성화의 상당부분이 지자체의 이행력에 달려 있으나, 기초 지자체 인력확충은 매우 더딘 상황(※ 기초지자체 당 전담인력은 약 0.9명 수준('19.8월))

⇒ 동물복지위원회 기능 강화, 정책 지원 전문기관 구축 등을 통해 동물복지 정책 거버넌스 확립

비전

**동물보호·복지 제도 고도화, 인프라 확충을 통한
성숙한 동물보호·복지 문화 내면화**

추진
목표

- ◆ 동물보호·복지에 대한 국민 공감 제고
- ◆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건전화
- ◆ 유기동물 감소 및 재입양 활성화
- ◆ 사육부터 유통까지 전 단계에서 농장동물 복지 제고
- ◆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기능 강화로 동물실험 윤리성 제고
- ◆ 동물보호·복지 거버넌스 확립

추진
과제

| 6대 분야 | 26대 과제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① 동물보호·복지 인식 개선 | ① 동물보호·복지 의무교육 확대 ② 개 물림사고 예방체계 구축 ③ 동물학대 행위 범위 확대 및 처벌 강화 ④ 동물등록제 개선 및 활성화 |
| ②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| ① 반려동물 생산·유통 환경 개선 ② 불법 영업 근절 ③ 반려동물 이력 관리 강화 ④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품질 개선 |
| ③ 유기·피학대 동물 보호 수준 제고 | ① 사설보호소 관리제도 마련 ②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시설·인력 기준 개선 ③ 유기·피학대 동물 구조 체계 개선 ④ 재난 발생 대응 역량 강화 |
| ④ 농장동물의 복지 개선 | ① 사육단계 동물복지 기준 개선 ② 운송·도살 단계 동물복지 기준 구체화 ③ 축산농가 동물복지 의무교육 확대 및 점검 강화 ④ 동물복지축산 인증 고도화 ⑤ 말·축제 이용 동물 복지 가이드라인 마련 |
| ⑤ 동물실험 윤리성 제고 | ①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 및 감독 기능 강화 ② 동물실험시행기관 준수사항·처벌강화 ③ 사역동물 실험 관리 개선 ④ 윤리적 동물실험 정보 보급 체계 구축 |
| ⑥ 동물보호·복지 거버넌스 확립 | ① 동물복지위원회 정책 심의 기능 강화 ② 동물보호·복지 R&D 기획단 운영 ③ 동물보호·복지 통계·실태조사 개선 ④ 지자체 동물보호·복지 정책 추진 동력 개선 ⑤ 동물보호·복지 전문기관 구축 |

IV. 과제별 추진 방안

1 동물보호·복지 인식 개선

< 개선방향 >

◆ 동물 소유자 의무교육 확대, 동물학대 방지,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 공감 제고

① 동물 소유자 대상 의무교육 확대

- (입양 전 교육 의무화) 교육 이수자만 생산·판매업자를 통한 동물구매가 가능하도록 의무화('22)
- (교육대상 확대) 동물보호·복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·보급('21) 하고, 초·중·고 정규교육 과정에 포함시키는 방안 추진
 - '동물보호의 날'을 지정하여, 교육·홍보 캠페인 집중 실시('21)
 - * 매년 10월 4일을 '동물보호의 날'로 규정하는 「동물보호법」 일부개정법률안 (홍의락의원 대표발의) 국회 계류 중

② 개 물림사고 예방체계 구축

- (기질 평가) 위험한 개*의 기질(공격성)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행동교정, 안락사 명령 등 의무 부과하는 체계 마련('22)
 - * 개 물림사고를 일으켰거나, 다른 사람 등을 위협한 개
- (맹견) 동물 생산·판매·수입업자 동물등록 의무화, 소유자 보험 가입 의무화('21), 수입제한, 공동주택 사육 허가제 추진('22)
- (통계구축) 개 물림 사고 통계 구축을 위해 경찰서·소방서 등 개 물림 사고 유관 기관과 정보 공유 협조체계 구축('20)
 - * (방안) 경찰서·소방서 등에 개 물림 혹은 위협 사고 접수 시 지자체에 통보하고, 공동조사를 통해 견종 정보 등 취득(※ 필요시 법적 근거 마련 등 추진)

3 동물학대 범위 확대 및 처벌 강화

○ (범위) 동물학대 행위*를 예시적·포괄적으로 규정('22)

* (현행) 열거적·한정적으로 규정

- 소유자의 사육관리 의무*도 구체화하고 처벌 규정 신설 검토

* (의무 예) ① 집안에서 짧은 목줄 등으로 묶어 사육하여 동물의 행동을 심하게 제약하는 행위, ② 채광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 감금하여 사육하는 행위 등

○ (처벌강화) 동물학대 유형별 처벌을 차등화*('21)하고, 처벌 수준 상향 검토

* (차별화 안) ①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→ 3년/3천만원, ② 상해를 입히는 행위,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→ 2년/2천만원

※ 현재는 모두 2년 이하의 징역,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

○ (재발방지) 동물학대 유죄 판결 시 소유권 제한, 수강명령 병과('21)

4 동물등록 절차개선, 대상 동물 범위 확대 등을 통해 동물등록제 활성화

○ (등록절차) 영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판매 시 소유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 후 판매 의무화('20)

- 인식표 방식은 폐지('21), 타 등록방식* 도입 여부에 따라, 외장형 방식도 폐지

* 비문 등 바이오인식 활용 동물등록방식 개발 정책 연구개발 추진 중('19~'21, 국비 6.92억원)

- 변경신고의무*를 정기적으로 통보하여 변경신고 현행화 유도('20)

* 소유자 변경, 동물이 죽거나 잃어버린 경우 등은 등록정보를 변경토록 의무화

○ (등록대상) 등록대상동물을 단계적으로 모든 개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('21)

-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*하고, 등록 방식, 등록 기준 월령 도출 추진

* 시범사업 확대(안) : ('19) 33개 지자체 → ('20)서울시, 경기도 → ('21) 광역시·제주특별자치도 → ('22) 인구 50만이상 지자체

2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

< 개선방향 >

◆ 반려동물 영업자 중심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, 불법 영업 철폐, 서비스 품질 개선을 통해 반려동물 관련영업 건전화 유도

1 반려동물 생산·유통 환경 개선 추진

- (생산업) 동물생산업 인력기준, 동물 출산주기·사육 공간 제공 등 기준 강화
 - * 인력기준 강화(75마리/인→50), 출산 휴지기간 연장(8→10개월), 사육 공간 크기 기준 의무화(기존 권고) 등
 - 표준 설계도 마련('20) 및 시설개선 지원 검토('21)
- (인터넷광고) 영업자 이외 온라인* 상 반려동물 판매 홍보 금지('22)
 - * 인터넷 홈페이지, 어플, 커뮤니티(카페, 밴드, 블로그 등), SNS(페이스북, 트위터 등)
- (표준계약서) 환불 및 교환 조건(조건에 해당하는 질병, 환불 기간 등) 명확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반려동물 거래 표준계약서 마련 협의('20년)
 - *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해결기준의 개정을 통해 표준계약서 마련

2 무허가·무등록 업체 근절을 위한 점검 및 처벌 강화 추진

- (처벌) 무허가(등록) 영업자 벌칙 지속 강화('21)
 - * (현행) 500만원 이하 벌금 → (개선안) 1년 이하 징역 또는 1,000만원 이하 벌금(※ 벌칙 수준은 2년 정도 이후('24년) 상향(2년/2천만원) 검토)
- (점검) 지자체 합동 점검·단속 정례화 및 경매장 전수 점검을 실시하여 무허가·무등록 업체 경매 참여를 점검(연 2회 이상)('20년)
 - 판매기준 월령(2개월) 준수, 건강상태 검진 신뢰성 제고 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검토

3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반려동물 유통 이력관리 강화

- 반려동물 생산·판매 등 유통경로 파악, 사육환경에 대한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단계적으로 제도 개선
 - 개체관리카드에 생산·판매(경매)업 허가·등록 번호 기재를 우선 의무화(20)
 - 정보 신뢰도 제고를 위해 이력정보 시스템 구축 추진(22~23)
 - 등록대상동물의 경우 동물등록정보에 영업자 정보 등을 입력토록 규정(24)
- 연구용역을 통해 이력제 도입 방안 검토 추진(21)

4 반려견 훈련 국가자격 도입, 서비스업 관리 범위 확대 추진

- (국가자격) 반려동물 훈련 국가자격 신설 근거 마련(20년) 및 자격검정 체계 구축(21~22)
 - (서비스업) 수분해장 등 동물 장묘 방식을 확대하고, 가정돌봄서비스(일명 펫시터) 영업범위 및 이동식 동물미용차량 등록기준 등을 마련(20)
 - 이동식 동물 장묘 방식 등도 타 법령* 조화 가능성 등 검토 추진
- * 대기환경보존법, 장사 등에 관한 법률, 자동차관리법 등
- (인증제) 동물 관리수준, 서비스 품질 등이 우수한 영업자 인증방안을 유관단체와 협의(민간인증방안 검토)(20)

3 유기·피학대 동물 보호 수준 제고

< 개선방향 >

- ◆ 지자체·사설동물보호시설의 관리를 강화하고, 지자체 동물구조·보호 전문성 제고를 통해 유기동물 등 보호 수준 제고

1 신고제 도입으로 사설보호소를 제도권 내에서 관리

- (의무부과) 신고제를 도입하여 보호개체 관리의무 등 부여('22)
 - 개체관리카드 작성, 보호 중인 동물 공고를 의무화*하고, 안락사 기준·번식 방지·분뇨 처리 기준 등도 적용
 - * 유기동물 등을 발견한 사설보호소는 우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고,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만 보호
 - 중장기적으로 시설·인력기준 등을 설정하고, 비영리단체·법인만 사설보호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제 전환 검토
- (관리개선) 광역시·도에 사설보호소 관리의무를 부과하고, 시·도에서 사설보호소 환경개선 사업* 추진 시 예산 지원('22)
 - * (예시) 기존 보호 중인 동물 개체관리카드 일제 작성, CCTV설치, 번식 방지(중성화, 암수 격리 공간 설치 등) 지원
- (분양제한) 사설동물보호소로 신고한 시설 외 유기동물 유상 분양* 금지('22)
 - * 현재 사설동물보호소로 알려진 시설이 유기동물을 타인에게 분양 시 보호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판매행위로 해석하고 있지 않음
 - 유기동물 포획 및 판매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

2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시설·인력 기준 강화로 유기동물 보호 수준 제고

-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실태조사('20)를 거쳐 관련 기준강화 방안 마련 및 관련 법령 개정 추진('21)

<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기준 강화(안)>

- ◇ (인력기준) 보호두수 당 인력 기준을 50마리당 1명으로 규정하고, 진료수의사, 포획인력 의무 고용
- ◇ (사육시설) 동물별 수용 공간 크기 의무화, 바닥이 망으로 된 사육시설 제한

3 유기·피학대 동물 구조체계 개선

- (포획반) 유실·유기동물 구조·보호비용 지원을 지속 확대*하는 한편, 광역 단위 포획반 구성 지원(21)
 - * (현행) 구조·보호 마리당 예산 지원 → (개선안) 동물보호센터별 운영비(인건비 등) 지원
 - ** 전담 포획반을 구성하여 관할 소방서, 동물보호단체 등과 협조체계를 구성하는 경우 사업비용 인센티브 제공 등 검토

- (피학대)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피학대동물을 구조할 수 있도록 동물학대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격리 할 수 있도록 개선(21)
 - * (현행) 법 제8조제2항(상해, 신체적 고통)에 해당하는 경우 격리 → (개선) 동물학대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경우 격리

- (인수제) 불가피한 사유*가 있는 경우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지자체에 인도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인수제 법적 근거 마련(21)
 - * (사유예시) 「병역법」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, 교도소·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, 부상으로 인해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

4 재난 대응 가이드라인 보급 등 재난 대응 역량 강화

- (가이드라인) 반려동물 동반 대피요령*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작(20)
 - * 사료, 동물용 의약품, 배설물 처리 도구, 이동용 케이지 등 마련
 -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 추진

- (동물 대피소 마련)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함께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 지정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 추진

4 농장동물 복지 개선

< 개선방향 >

◆ 사육부터 유통까지 전 단계에 걸쳐 농장동물 복지 수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점검 강화

1 사육단계 동물복지 기준 마련·적용

○ 임신돈 스톨 사육, 산란계 강제털갈이 등 비윤리적 축산 관행 철폐

< 동물복지형 축산기준(안) 요약 >

| 구분 | 법령 | 처벌 | 유예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|
| 임신돈 고정틀 사육 제한 기간 군사공간 제공 의무 | 축산법 시행령 | 시정명령* | 10년 |
| 임신돈 고정틀 사육기간을 교배 후 6주 이내로 제한 | 축산법 시행규칙 | 500만원 | |
| 산란계 강제 털갈이 금지 | | 이하 과태료 | |
| 매일 1회 이상 점검 및 폐사·투약 기록 의무 |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| × | × |
| 축사 내 암모니아 농도를 25ppm이하로 유지 | | | |
| 육계, 돼지 적정 조도 및 조명시간 규정 | | | |
| 육계 농가 깔짚을 정기적으로 교체 | | | |
| 생후 7일 이내 돼지 송곳니 절치·거세 | | | |

* 시정명령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('20.1월부터 1,000만원 이하의 과태료)

- (사양법 보급) 축사시설현대화 사업*, 농진청 연구사업**을 통해 동물복지기준에 따른 사양방식, 축사 시스템 개발 및 보급 추진('20~)

* (축사시설현대화) 축사표준설계도 개발, 동물복지형 전환 농가 예산 우선·우대 지원('18)

** (농진청) 임신돈 군사사육 방식 연구('19~'21), 육계 동물복지를 위한 깔짚 교체 주기('20~'22) 등

○ 산란계 배터리 케이지 사육 방식 전환을 위한 로드맵* 마련('21)

* 해외 사례, 농가 영향 분석 및 제도개선 및 농가 지원 방안 등 포함

2 운송·도축단계 동물복지 기준 구체화

○ 실태조사('20)를 거쳐 운송·도축과정 준수사항을 보완·구체화하고 미준수시 처벌을 체계화('21)

※ 현행 「동물보호법」은 운송용 우리를 던지거나, 운송을 위한 전기몰이 도구 사용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

③ 축산농가 의무교육 확대 및 점검 강화

- (교육) 축산 허가·등록 농가 대상 교육에 농장동물 복지 수준 제고 **교육 확대**(현행 1시간 → 개선 2시간) 및 **내실화 추진**(‘21년)
 - * 축산 허가(1년마다)·등록(2년마다) 농가 대상 6시간 교육을 의무화 하고 있고, 동물복지 인증 기준, 동물복지형 기준에 대해 1시간 교육
- (점검) 축산업 허가·등록 농가 **준수사항 점검을 매년**(현행 2년) 추진(‘20)
 - **도축장 내 CCTV 설치를 의무화**하고, 점검 인력(광역 시도, 가축 위생방역지원본부 등)을 활용하여 **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**(‘22)

④ 인증기관 지정제 도입, 인증범위 확대 등 동물복지 인증 고도화

- (기관) 공공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 및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여 인증제도 체계화(‘21)
 - 인증 갱신제를 도입하여 인증관리도 강화(‘23년)
- (범위) 축산물을 생산·제조·가공하는 자까지 **인증범위를 확대***(‘23)
 - * 현재는 축산농가를 인증하고, 농가에서 생산하는 축산물(계란)과 1차 가공품(닭고기 등)에 인증표시
 - 인증 축산물 **원재료 함량에 따라 인증마크·‘동물복지’ 용어 사용 차등화**
 - * (표시안) 원재료의 95% 인증 축산물일 경우에만 인증마크 및 ‘동물복지’ 용어 허용, 70~95%일 경우 주 표시면이 아닌 곳에 ‘동물복지’ 용어 허용

⑤ 경주마, 싸움소, 축제 활용 동물에 대한 동물복지 가이드라인 마련

- (말복지) 마사회 운영 **말복지위원회***에 동물보호단체를 참여토록 하여 말복지 가이드라인 개선 등 말 복지관련 정책 의견 수렴 고도화(‘20)
 - * 말산업 분야의 말복지 정책 수립을 위한 마사회 자문기구로 위원장1명, 외부위원6, 내부위원4 총 11명으로 구성(‘19.8월 구성)
- (축제) 동물복지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거쳐 싸움소, 축제 활용 동물에 대한 동물복지 가이드라인을 관련 지자체에서 마련(‘21)

5 동물실험 윤리성 강화

< 개선방향 >

◆ 동물실험시행기관 준수사항,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통해 동물실험 윤리성 제고

1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변경심의 및 심의 후 감독기능 강화

- (위원수 개선) 심의위원 수 제한을 폐지(현행 15명)하고, 전문위원 지정제(20)*, 위원 보수교육(21)** 등을 제도화하여 심의 기능 강화
 - * 심의위원 중 3명을 선정하여 접수된 동물실험심의 요청을 사전 심의
 - ** 동물실험심의의 취지, 절차 등에 대한 윤리위원의 이해도제고를 위해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수강하도록 규정
- (심의범위 확대) 중요사항 변경*시 변경심의 의무화(21)
 - * (중요사항 변경 검토안) 동물실험 책임자 변경, 인도적 실험종료 시점 변경, 동물실험 마릿수 증가, 실험 고통 등급 상향 등
- (심의 후 감독) 기 심의한 실험 진행 상황에 대해 정기·불시 점검을 의무화하고, 심의내용을 위반한 경우 실험을 중지 시킬 수 있는 권한 부여(21)

2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준수사항·처벌 강화

- (행정지원인력) 동물실험계획 사전검토 등 심의 지원, 신규 위원 교육 등을 지원하는 행정 전담인력 두도록 의무화(21)
 - * 세부 전담인력 기준 등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, 추후 법제화 검토
- (처벌강화) 심의를 받지 않고 실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강화(21)
 - * (현행)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→ (개선안)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- (연구자 교육) 실험동물복지,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을 연구자 등*에게 교육할 의무 부과('21)
 - * 연구자, 동물실험시행기관의 관리자, 사육자 등 동물실험관련 종사자
- (윤리위 운영실적 통지내용 확대)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사용한 실험동물의 출처, 사역동물 사용 실적 통지의무 신설('20)
 - 실험동물 출처 정보를 검토하여, 실험동물공급업자를 통해서만 동물을 공급받도록 하는 방안 검토

3 사역동물 실험 요건을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

- 사역동물 실험 요건*과 처벌(현행 300만원 이하의 벌금 → 2년/2천만원)을 강화 ('20)하고, 제3의 기관에서 심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('23)
 - * 사역견 선발방식, 효율적인 훈련방식에 관한 연구로서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사역동물로 실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제한

4 대체 시험법 DB 구축 및 보급, 윤리위원 후보 pool 구축

- (대체시험) 대체시험법 여부를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대체 시험법 정보를 취합 및 게재하는 온라인 포털 구축('23)
 - 각 법률에 대체시험법이 반영*되도록 관계부처 협의 지속 추진
 - * 「농약관리법」 「식품의약품검사법」 등에 대체시험법 적용 권고 조항 포함
 - 「화학물질등록평가법」은 척추동물대체시험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('18.4월)
- (윤리위원 pool)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원활한 구성 지원을 위해 외부위원 전문가의 pool을 구성 및 관리('20)

6

동물보호·복지 거버넌스 확립

< 개선방향 >

- ◆ 동물복지위원회 기능 강화, 정책 지원 전문기관 구축, 통계 개선을 통해 동물보호·복지 거버넌스 확립

1 동물복지위원회 위상 격상 및 심의기능 부여 등을 통해 위원회 기능 강화

- (위원) 농식품부 차관·민간위원 공동위원장으로 구성하고, 관계부처 참여 및 분과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수를 30명 이내(현행 10명)로 확대(21)
- (자문·심의 범위) 야생·수생동물 등 타부처 소관 업무를 자문 범위에 포함하고, 특정 사안은 심의*토록 규정
 - * (심의 안)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, 맹견의 범위 조정, 동물복지축산 인증 기준 변경, 동물복지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 등

2 동물보호·복지 R&D 기획단 운영

- 동물보호·복지 관련 인문·사회, 과학기술 분야 연구 활성화를 위해 관계기관, 대학교수, 관련단체 등이 참여하는 R&D 기획단 구성(20)
 - 분야별 연구에 대한 로드맵 설정 및 신규 과제를 발굴

3 현장 실태조사 강화 인구주택 총조사(20)에 반려동물 사육 여부 조사 추진

- (실태조사) 중앙단위 현장 실태조사를 정례적·체계적으로 수행하고, 결과 및 정책제언을 지자체별로 권고(20)
 - 지자체 지정·사설 동물보호시설, 동물관련 영업자 등을 농식품부 용역사업 등을 통해 현장 실태 조사 추진
- (인구 총조사) 통계청과 협의를 통해 '20년 인구·주택 총조사 조사 항목에 반려동물 사육 여부, 마릿수 등을 포함(20)

4 지자체 동물보호·복지 정책 추진 동력 개선

- (지역 동물복지위원회) 지역 의견이 효과적으로 수렴 및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**광역시도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의무화**(‘21)
 - * 서울시,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는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
- 지역 경찰청, 소방청 등을 위원 등으로 참여토록 하여 개 물림사고, 유기·피학대동물 구조 등 동물관련 지역 현안 공동 대응
- (인력보강) 행안부 지자체 합동 평가 지표에 현장 지도·점검 실적, 유기동물 분양실적 등을 포함하여 **인력·조직 보강 유도**(‘21)
 - 공중방역수의사 등 지자체 동물 관련 전문 인력을 동물 구조·보호, 영업자 지도·점검 등 지자체 동물보호업무 지원 추진도 검토

5 중앙 정부·지자체 산하 전문기관 마련 추진

- 동물보호·복지 관련 조사·점검, 현장 민원 대응 등을 지원할 수 있는 **전문기관 설립 또는 지정 추진**(‘23)
 - ※ 「아동복지법」에서는 아동복지 관련 정책 및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중앙 정부는 ‘아동권리보장원’, 지자체는 ‘아동보호전문기관’을 설립·설치하도록 규정
- **효과적인 현장대응 및 새롭게 신설되는 업무***추진을 위한 적정 인력과 조직형태를 산출(‘20, 연구용역)하고, 관계기관 협의
- * 위험한 개 판정, 반려동물 이력제, 중앙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, 동물복지 축산 인증제 운영 등
- **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, 동물복지 기금 도입** 등을 검토하여 지자체 동물보호센터, 전문기관 등의 **설치·운영비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**(‘22)

V. 실천 계획

1 제도 정비 계획

| 개정 | 구분 | 개정사항 | 개정 법령 | 시행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|-----|
| '20 | 인식 개선 |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동물학대 처벌 강화 | 동물보호법 | '21 | | |
| | | 동물학대행위자 교육 이수 명령, 소유권 제한 병과 | 동물보호법 | | | |
| | | 소유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 후 판매 | 동물보호법 | | | |
| | | 맹견 소유자 손해보험 가입 의무 부과 | 동물보호법 | | | |
| | | 모든 맹견을 등록대상동물에 포함 | 시행령 | | | |
| | 영업 | 개체관리카드에 허가·등록 번호 기재 의무화 | 시행규칙 | '20 | | |
| | | 동물장묘업에 수분해장, 위탁관리업에 펫시터 포함 | 시행규칙 | '21 | | |
| | | 연간 판매 금액 초과 시 판매업으로 등록 의무화 | 동물보호법 | | | |
| | | 무허가·등록 영업자 처벌을 징역형 상향 | 동물보호법 | '22 | | |
| | 유기 | 반려동물 훈련 국가자격 신설 및 기질평가 도입 | 동물보호법 | '22 | | |
| | |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기준 강화 | 시행규칙 | '21 | | |
| | | 피학대동물 격리 범위 확대 | 동물보호법 | '22 | | |
| | 사설동물보호소 신고제 도입 | 동물보호법 | | | | |
| | 농장 | 동물복지형 축산기준 농가 적용 | 동물보호법령 등 | '20 | | |
| | |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 농가 준수사항 매년 점검 | 축산법 시행령 | | | |
| | 실험 | 실험동물 공급 출처 검역본부 제출 의무화 | 사역견 실험요건 강화 | 시행규칙 | '20 | |
| | | |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위원수 폐지 등 | 동물보호법 | | |
| | | 사역동물 농식품부 통보 의무 신설 | 동물실험윤리위원, 연구자 등 보수교육 의무화 | 동물보호법 | '21 | |
| | | | 동물실험윤리위원회 행정인력 두도록 의무화 | 시행령 | | |
| | | | 동물실험윤리위원, 연구자 등 보수교육 의무화 | 동물보호법 | | |
| 사역동물 농식품부 통보 의무 신설 | | | 동물보호법 | | | |
|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 후 감독 권한 부여 | | | 동물보호법 | | | |
|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 의무(변경심의 등) 확대 | | | 동물보호법 | | | |
| 거버넌스 | | | 동물복지위원회 기능 개선 | 동물보호법 | | '21 |
| | | | 광역시도 동물복지위원회 구성 의무화 | 동물보호법 | | |
| '21 | 인식 개선 | 동물보호의 날 지정 | 동물보호법 | '21 | | |
| | | 동물등록방식 중 인식표 방식 폐지 | 시행규칙 | | | |
| | | 영업자 등 제외 모든 개로 동물등록범위 확대 | 시행령 | '22 | | |
| | | 입양전 교육 이수 의무 부과 | 동물보호법 | | | |
| | | 동물학대 범위 개선 | 동물보호법 | | | |
| | | 맹견 수입 및 공동주택 사육 허가제 | 동물보호법 | | | |
| | 영업 | 영업자 외 반려동물 인터넷 광고 금지 | 동물보호법 | '22 | | |
| | | 유기 | 사육포기 반려동물 인수제 근거 마련 | 동물보호법 | '21 | |
| | 농장 | 동물복지축산 인증기관에 공공기관 포함 | 운송도축기준 개선 | 동물보호법 등 | '21 | |
| | | | 동물복지축산 인증 범위 확대 | 동물보호법 | '23 | |
| | | 거버넌스 | 동물복지축산 인증 축산물 함량에 따라 표시 차별화 | 동물보호법 | | |
| | | | 동물보호·복지 전문기관 구축 추진 | 동물보호법 | '23 | |

2 계획의 추진 및 평가 체계

계획의 추진 체계

- 과제 담당기관(농식품부, 검역본부, 농진청 등)은 동물복지 5개년 종합 계획에 의거하여 자체 세부계획 수립 시행
 - 주요 과제 시행을 위한 단계별 세부계획 수립 시행 및 정책지표 달성을 위한 연차별 소요예산 확보 철저
- 지방자치단체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자체 계획 수립·시행
 - 시·도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고, 이를 농식품부에 통보(동물 보호법 제4조)

계획의 평가 체계

-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, 추진실적을 점검·평가하여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
 - 농식품부에서 매년 담당기관별 시행계획을 총괄 조정하고, 추진 실적 점검·평가를 통해 다음연도 시행계획 수립
- 시·도에서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및 자체계획에 따라 매년 시·도, 시·군·구 추진실적 점검·평가
 - 지자체별 실적 공표 및 포상, 우수사례 공유 등 추진
- '22년에 동물복지 종합계획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, 정책 여건 변화, 정책 수요 등을 반영하여 종합계획 보완 추진

**붙임 : 종합계획 과제별 세부
추진 계획**

1 동물보호·복지 인식 개선

< 개선방향 >

◆ 동물 소유자 의무교육 확대, 동물학대 방지,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 공감 제고

추진과제 1-1 동물보호·복지 의무교육 확대

< 주요 변경 사항 >

| | 현 행 | 개 선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교육 | ▶맹견 소유자 의무 교육 운영('19.3) | ▶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이수 의무 부과 |
| 기념일 | ▶없음 | ▶동물보호의 날을 법률로 규정 |

□ (필요성) 동물보호·복지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대국민, 반려동물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체계적 교육 필요

※ (해외사례) 중앙 정부차원 소유자 의무교육을 운영하는 사례 미확인(16년까지 스위스에 제도가 있었으나 폐지), 독일 일부 주는 맹견 소유자 자격 평가 운영

□ (추진방안) 동물 영업자를 통한 동물 입양 전 교육이수를 의무화 하고, 대국민 동물보호·복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

○ (입양 전 교육 의무화) 교육 이수자만 생산·판매업자를 통한 동물구매가 가능하도록 의무화('22)

○ (교육대상 확대) 동물보호·복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·보급*('21) 하고, 초·중·고 정규교육 과정에 포함시키는 방안 추진

* 지자체 동물보호·복지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, 교육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정규 교육과정으로 활용하는 방안 추진

○ (동물보호의 날) 매년 특정일을 '동물보호의 날'로 지정하여 동물 보호·복지 교육·홍보 캠페인 집중 실시('21)

* 매년 10월 4일을 '동물보호의 날'로 규정하는 「동물보호법」 일부개정법률안 (홍의락의원 대표발의) 국회 계류 중

<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>

(단위 : 백만원)

| 구 분 | '20 | '21 | '22 | '23 | '24 |
|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
| 일 정 | ○교육프로그램 개발 | | | | |
| | ○ 「동물보호법」 등 제도 개선 | | | | |
| | ○입양 전 의무교육 운영 | | | | |
| | ○동물보호의날 운영 | | | | |

추진과제 1-2 개물림사고 예방체계 구축

< 주요 변경 사항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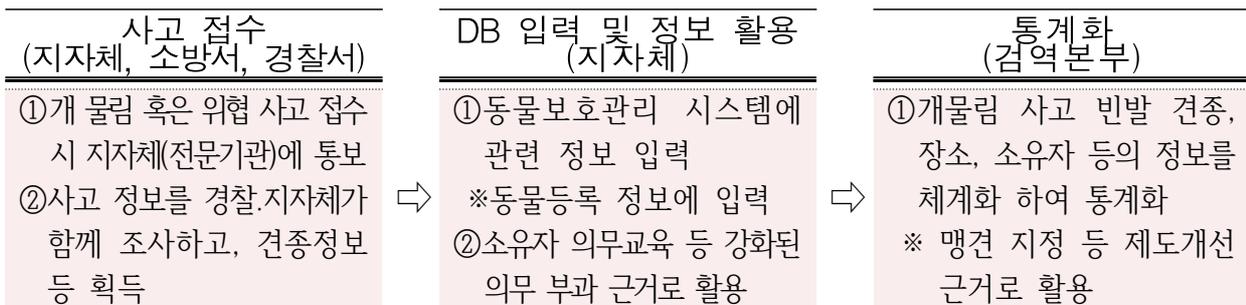
| | 현 행 | | 개 선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|--|
| 기질 평가 | ▶ 관련 규정 없음 | | ▶ 위험한 개의 공격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행동교정, 안락사 명령 등 의무 부과 |
| 맹견 | ▶ 입마개, 소유자 교육, 출입제한, | ⇨ | ▶ 수입 제한, 공동주택 사육제한, 책임 보험 가입 의무 |
| 통계 | ▶ 관련 협조 체계 없음 | | ▶ 소유자, 견종 등 정보 생성 절차, 관계기관 조사 협조체계 등 마련 |

- (필요성) 반려견 소유자 안전관리 의무를 지속 강화하고 있으나,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으로 보다 정밀한 제도 필요
 - 안전관리 제도의 공백을 최소화하고, 개 물림 사고 정보를 체계적으로 생성하여 정책 개발 및 집행의 근거를 확충할 필요
 - ※ (해외사례) 독일, 미국(주별)은 개의 공격성을 평가하는 기질 평가를 운영 중, 영국, 독일, 싱가포르, 호주 등은 맹견 수입 금지, 소유 제한 중

- (추진방안) 기질 평가 도입, 맹견 관리의무 강화 등을 통해 개 물림 사고 발생 최소화하고 개 물림 사고 정보 DB를 구축
 - (기질평가) 위험한 개*의 기질(공격성)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행동교정, 안락사 명령 등 의무를 부과하는 체계 마련(22)
 - (맹견관리) 수입 제한, 생산업자·판매업자·수입업자 등 영업자 동물등록 의무 부과, 공동주택 사육 허가제 등 추진
 - (수입제한) 동물수입업 등록을 한 자만 맹견 수입을 허용*하고, 가전법상 수입 동물 사전 신고서에 견종을 기재토록 의무화**(22)
 - * (현행) 수입업 등록 여부 및 견종에 관계없이 1인당 10마리까지 수입 허용
 - ** (현행) 견종 기재란이 있으나 기재하지 않더라도 수입 허용
 - (영업자 동물등록 의무 부과) 맹견을 기르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동물 생산·판매·수입업자도 동물등록을 의무화하여 현황 파악(21)

- (사육허가) 다중주택, 다가구주택, 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)에서 맹견 사육 시 지자체에 허가(22), 일반인 사육 허가제·중성화 의무화도 검토
- (보험가입) 맹견 소유자에 대해서 손해보험가입 의무화(21)
- (판정위원회 운영) 맹견 여부 판정을 위한 전문위원회 구성·운영(21)
- (안전관리 의무) '등록대상동물'에 한정된 안전관리 의무를 '모든 개'로 확대하고, 소유자등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규정(20)
- (DB 구축) 경찰서·소방서 등에 개 물림 혹은 위협 사고 접수 시 지자체에 통보하고, 공동조사를 통해 견종 정보 등 취득(20)
 - * 지자체는 맹견 여부, 안전조치 여부 등을 경찰에 자문
- 취득한 정보를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개물림 사고 빈발 견종, 소유자 등의 정보를 체계화하고, 제도 집행·개선* 근거로 활용
 - * 소유자 의무교육 부과, 개물림 사고 빈발 견종 맹견 지정 근거로 활용 등

<개 물림 사고 DB 구축 체계>



<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>

| 구 분 | '20 | '21 | '22 | '23 | '24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
| 일 정 | ○기질 평가 운영 | | | | |
| | ○맹견 동물등록 의무화 | | | | |
| | ○맹견 손해보험 가입 의무화 | | | | |
| | ○맹견 공동주택 사육, 수입 제한 | | | | |
| | ○개물림사고 DB 구축 | | | | |

추진과제 1-3 동물학대 행위 범위 확대 및 처벌 강화

< 주요 변경 사항 >

| | 현 행 | | 개 선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범위 | ▶ 열거적, 한정적으로 규정 | | ▶ 예시적, 포괄적으로 규정 |
| 처벌 | ▶ 죽음/상해/신체적고통 모두 2년/2천만원 이하 | ⇒ | ▶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년/3천만원 |
| 재범 | ▶ 재범 방지 관련 제도 미흡 | | ▶ 학대행위자에게 수강명령 및 소유권 제한 등 부과 |

- (필요성) 동물학대에 대한 국민인식과 제도와의 차이를 최소화 하고, 동물학대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할 필요
 - ※ (해외사례) 상당수 국가가 2~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, 법원명령을 통해 소유권을 제한하는 국가도 있음

- (추진방안) 동물학대 처벌을 유형별로 강화하고, 학대행위자 재범 방지 방안도 강구, 동물학대의 범위를 '포괄적'으로 규정하는 방안 검토
 - (처벌강화)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현행 2년이하의 징역,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/3천만원으로 강화(21)
 - 추후 동물학대 유형(상해, 신체적 고통 등)별 처벌 상향 및 차별화 검토
 - (재발방지) 동물학대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수강명령 등을 부과 하고, 학대행위자의 반려동물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마련(21)
 - 법원의 명령을 통해 피학대동물은 몰수하고, 다른 반려동물 소유도 일정기한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
 - ※ 반려동물 영업자의 경우 「동물보호법」 제8조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분 시 5년간 영업 등록·허가 제한
 - (학대범위) 동물학대 행위*를 예시적·포괄적으로 규정(22)
 - * (현행) 열거적·한정적으로 규정
 -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(법 제8조제1항제4호, 제2항제4호)의 제한 규정(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)을 폐지하는 방안 검토
 - *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를 법으로 상향하여 법의 안전성 도모
 - 소유자의 사육관리 의무*도 구체화하고 처벌 규정 신설 검토
 - * (의무 예) 지나치게 짧은 목줄로 묶어 사육, 채광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 감금 사육 등 금지 등

<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>

| 구 분 | | '20 | '21 | '22 | '23 | '24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
| 일 정 | ○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처벌 강화 | | | | | |
| | ○동물학대 범위 개선 | | | | | |
| | ○학대행위자 수강명령 부과, 소유권 제한 | | | | | |
| | ○동물 소유자 사육관리 의무 부과 | | | | | |

추진과제 1-4 동물등록제 개선 및 활성화

< 주요 변경 사항 >

| | 현 행 | 개 선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범위 | ▶ 생산·판매업자 제외 ※ 주택·준주택일 경우는 등록 | ▶ 모든 맹견 등록 의무화, 생산·판매업자 소유 동물등록도 검토 |
| 방식 | ▶ 인식표, 외장형, 내장형 | ▶ 인식표 폐지, 바이오 인식방식 도입 검토 |
| 절차 | ▶ 소유자가 등록 | ▶ 생산·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판매 시 등록 후 판매 |

- (필요성) 등록대상동물의 범위 명확화, 동물등록 절차 간소화를 통해 동물등록 제도 공백, 동물등록 누락을 최소화할 필요

※ (해외사례) 영국은 내장형 방식으로 일원화하고, 동물판매 시 내장형 칩을 삽입하고 판매하도록 규정('16)

- (추진방안) 단계적으로 '모든 개'로 등록범위 확대, 생산·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판매 시 등록 후 판매하도록 의무화 추진 등

- (등록범위) 등록대상동물을 모든 개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(21)

* (검토안) 반려동물 생산업 등 영업자가 번식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개에게 등록의무 부과

- (고양이 동물등록) 동물등록을 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확대*하되, 등록 방식, 등록 기준 월령은 시범사업을 통해 도출(처벌은 미규정)
 - * 시범사업 확대(안) : ('19) 33개 지자체 → ('20)서울시, 경기도 → ('21) 광역시·제주특별자치도 → ('22) 인구 50만이상 지자체
 - 시범사업을 통한 소유자 인식 조사 등을 통해 등록방식, 월령 등을 규정
- (등록절차) 영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판매 시 소유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 후 판매를 의무화하고, 미이행시 처벌('20)
- (변경신고 활성화) 변경신고의무*를 정기적으로 통보하여 변경신고 현행화 유도('20)
 - * 소유자 변경, 동물이 죽거나 잃어버린 경우 등은 등록정보를 변경토록 의무화
- (등록방식) 동물등록방식에서 인식표를 제외('21)하고, 바이오인식 방식* 등 다른 동물등록방식 도입 여부에 따라 외장형도 폐지 추진
 - * 「바이오인식 활용 동물등록방식 개발」 정책 연구개발 추진('19~'21, 국비 6.92억원)
- (점검강화) 반려견 출입이 허용된 민간·공공시설에 등록된 반려견만 출입이 허용 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추진
 - 반려견놀이터, 반려동물 문화센터 등 지자체 운영 시설 등에서 등록대상동물의 동물등록 여부를 점검하고, 미등록 시 출입을 제한('20)
 - 등록대상동물 출입이 가능한 민간 사업장*에 미등록 동물 출입을 제한 및 점검하는 방안 협조 추진
 - * 아웃렛 등 쇼핑몰, 비행기·배·철도·버스 등 대중교통 등

<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>

(단위 : 백만원)

| 구 분 | | '20 | '21 | '22 | '23 | '24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
| 일 정 | ○ 모든 맹견 동물등록 | | | | | |
| | ○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 | | | | | |
| | ○ 생산·판매업자 동물등록 신청 후 판매 의무화 | | | | | |
| | ○ 미등록 동물 지자체 시설 출입 제한 | | | | | |

2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

< 개선방향 >

◆ 반려동물 영업자 중심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, 불법 영업 철폐, 서비스 품질 개선을 통해 반려동물 관련영업 발전 유도

추진과제 2-1 반려동물 생산·유통환경 개선

< 주요 변경 사항 >

| | 현 행 | 개 선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생산업 | ▶ 인력기준, 출산주기 준수 의무 등 규정 | ▶ 인력기준 강화(75마리/인→50), 출산 휴지기간 연장(8→10개월), 사육 공간 크기 기준 의무화(기존 권고) 등 |
| 일반인 | ▶ 일반인 판매 광고 제한 없음 | ▶ 인터넷 판매 광고 금지 |
| 서비스 | ▶ 동물보호법시행규칙 영업자준수 사항에 계약서 예시 제시 | ▶ 연간 판매금액 15만원 초과 시 영업 등록 ▶ 표준계약서 마련 ※ 공정거래위원회, 소비자보호원 협조 |

□ (필요성) 무분별한 동물 거래 행위를 제한하고, 동물 생산업 사육환경 개선을 통해 반려동물 복지수준을 제고할 필요

※ (해외사례) (싱가포르) 펫샵에서만 거래 가능, (프랑스) 모든 개, 고양이의 거래 신고제 운영

□ (추진방안) 동물생산업의 시설·인력 기준 강화, 반려동물 거래 표준계약서 마련, 일반인의 인터넷 판매 광고 제한 등 추진

○ (생산업) 동물생산업 인력기준, 출산주기, 공간 제공 등 기준을 강화*하고, 평판 설치 비율** 점진적 상향 추진

* 인력기준 강화(75마리/인→50), 출산 휴지기간 연장(8→10개월), 사육 공간 크기 기준 의무화(기존 권고) 등

** 바닥이 망으로 된 사육시설에 평판을 일정 비율 설치하도록 의무화 : ('18.3월 이전) 관련 기준 없음 → ('18.3월 이후) 기존 30%, 신규 0 → ('21) 기존 50

- 동물생산업의 동물복지를 고려한 사육시설 및 동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동물의 종류별로 표준설계도 마련*(20)하고, 시설개선 지원 검토(21)

* '20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동물의 종류(개·고양이) 및 시설유형별로 구분하여 표준설계도 마련

- (일반인 판매) 영업자 이외에는 인터넷 등에 판매 광고를 금지('22)하고, 영업에 해당하는 거래기준(연간 판매금액) 적용('21)
 - 인터넷 홈페이지, 어플, 커뮤니티(카페, 밴드, 블로그 등), SNS(페이스북, 트위터 등)를 통한 반려동물 판매·홍보 금지
 - * 경찰청(사이버수사대), 지자체 및 커뮤니티 운영자 등과 협력하여 인터넷(정보통신망) 활용 불법 거래 점검 및 단속
 - ※ 일반인의 분양은 동물무료분양 게시판(동물보호관리시스템), 동물판매업소 및 동물보호단체 등을 통해 무료입양·분양하도록 유도
 - 연간 판매 금액이 15만원을 초과할 경우 판매업으로 등록하도록 규정
- (표준계약서 마련) 환불 및 교환 조건(조건에 해당하는 질병, 환불 기간 등) 명확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반려동물 거래 표준계약서 마련 협의('20년)
 - * 공정위 및 한국소비자원 협의를 통해 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(공정위 고시) 개정 및 표준계약서 마련

<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>

| 구 분 | | '20 | '21 | '22 | '23 | '24 |
|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
| 일 정 | ○ 판매업 해당 거래기준 적용 | | | | | |
| | ○ 일반인 인터넷 판매제한 적용 | | | | | |
| | ○ 생산업표준설계도 마련 | | | | | |
| | ○ 생산업 시설 개선 지원 | | | | | |
| | ○ 표준계약서 마련 | | | | | |

추진과제 2-2 불법영업 근절

< 주요 변경 사항 >

| | 현 행 | 개 선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점검 | ▶ 영업자 지자체 1년 1회 점검 | ⇒ ▶ 무허가(등록) 업체에 대한 합동 점검·단속 정례화(2회 이상) ▶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▶ 폐업 시 지자체의 현장 확인을 거친 후 폐업 |
| 무허가 | ▶ 500만원 이하 벌금 | |
| 폐업 | ▶ 동물 기증·분양 결과를 지자체에 제출 | |

- (필요성)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무허가·무등록 업체로 인한 불법 반려동물 거래 근절 필요
- (추진방안) 불법 무허가·무등록 업체의 폐업 유도를 위한 점검 및 처벌 강화 등 추진
 - (점검) 지자체 합동 점검·단속 정례화 및 경매장 불시 점검을 정례적으로 실시하여 무허가·무등록 업체 경매 참여 점검(연 2회 이상)(20)
 - 반려동물 경매장에서 무허가·무등록 업체가 경매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개체관리카드에 허가·등록 번호를 기재하도록 제도 개선
 - 판매기준 월령(2개월) 준수, 건강상태 검진 신뢰성 제고 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검토
 - (처벌 강화) 무허가·무등록 업체에 대한 벌칙이 낮아 벌금 부과에도 불구하고, 지속적으로 불법영업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 해 벌칙 대폭 강화(21)
 - * (현행) 500만원 이하 벌금 → (개정안) 1년 이하 징역 또는 1,000만원 이하 벌금, 벌칙 수준은 '24년에 상향(2년 2천만원) 검토
 - (폐업 동물 처리) 영업 폐업 시 영업자 보유동물의 적절한 처리 여부 확인 절차 마련(21년)
 - * 영업자는 폐업 전에 처리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지자체의 현장 확인을 거친 후 폐업하도록 관련 규정 개선

<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>

| 구 분 | | '20 | '21 | '22 | '23 | '24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
| 일 정 | ○ 영업자 점검 정례화 | | | | | |
| | ○ 무허가·무등록 영업 처벌 기준 강화 | | | | | |
| | ○ 폐업 동물 처리 확인 | | | | | |

추진과제 2-3 반려동물 이력 관리 강화

< 주요 변경 사항 >

| | 현 행 | | 개 선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개체 관리 | ▶ 영업자가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보관 | ⇒ | ▶ 반려동물 생산·판매단계에서 개체식별번호 부여 후 판매 |
| 시스템 | ▶ 없음 | | ▶ 반려동물 이력정보 시스템 구축 및 동물등록제 시스템과의 연계 |

□ (필요성) 소비자가 구매하는 동물의 사육환경, 동물관리 이력 등을 알 수 있도록 반려동물의 생산·판매 단계 이력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할 필요

□ (추진방안) 이력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, 제도개선 등 추진

○ 반려동물 생산·판매 단계 이력제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및 해외사례조사 추진('21년)

* 유통경로별(생산, 판매, 소비자) 이력관리 세부 방안, 축산물 이력제도 사례조사 및 벤치마킹, 해외사례조사, 이력정보 시스템구축 방안, 도입효과 분석

- 동물생산·판매업자의 이력제 도입을 위해 동물보호법령 개정('22)

반려동물 이력제 도입 계획(안)

① 개체관리카드에 생산·판매(경매)업 허가·등록 번호 기재 의무화('20)

② 반려동물이력정보 시스템 구축*('22)

* 각 단계별 이력정보 등록 체계 및 시스템 구축

③ 시범사업 운영(반려동물 생산업·판매업체 조사 및 식별번호* 부여)('23)

* 축산물의 경우 소는 개체별, 돼지·가금은 농장별로 식별번호 부여

④ 등록대상동물의 경우 동물등록정보에 영업자 정보 등을 입력 하도록 하고 동물보호관리 시스템과 이력정보 시스템 연계('24)

< 주요 사업 추진일정 >

(단위 : 백만원)

| 구 분 | | '20 | '21 | '22 | '23 | '24 |
|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
| 일 정 | ○ 연구용역 및 해외사례 조사 | | | | | |
| | ○ 이력제 도입 근거 마련 | | | | | |
| | ○ 이력시스템 구축 | | | | | |
| | ○ 시범사업 시행 | | | | | |

추진과제 2-4 반려동물 훈련 국가자격 도입, 서비스업관리범위 확대 추진

< 주요 변경 사항 >

| 현 행 | | 개 선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국가 자격 | ▶ 영업자가 개체관리카드를 작성 하여 보관 | ▶ 반려동물 생산·판매단계에서 개체식별번호 부여 후 판매 |
| 서비스업 | ▶ 없음 | ▶ 반려동물 이력정보 시스템 구축 및 동물등록제 시스템과의 연계 |

- (필요성)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서비스업 관리 범위를 확대하고, 관련 국가자격 신설 등 필요
- (추진 내용) 반려동물 훈련 국가자격 신설 근거 마련 및 자격 검정 체계 구축, 관련서비스업 영업범위 명확화
 - (국가자격) 반려동물 훈련 국가자격 신설 근거 마련('20년) 및 자격검정 체계 구축 등 제도 완비('21~'22)
 - ① 「동물보호법」에 자격신설 근거, 훈련사의 직무 등을 규정
 - ② NCS 직무에 기반한 이론과 실기의 교수·학습 자료 개발을 추진 하고, 자격검정 체계 마련 및 운영 기관 지정 등 추진
- * 학습모듈 : NCS 능력단위를 교육·훈련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한 학습 자료
- ※ 자격 검정 체계 마련을 위해 농식품부, 검역본부, 지자체, 유관단체, 전문가 및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TF팀 구성·운영 추진('21년)

<참고> 국가자격 신설 시 주요 검토 사항

- (자격명칭) 대상 동물, 훈련 목적 등에 따라 명칭을 정할 필요
 - i) 자격의 포괄적 범위를 포함하기 위해 명칭에 '반려동물'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ii) 실질적으로 '개'를 대상으로 훈련이 이루어지는 점에서 '반려견'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거론되는 상황
 - ※ 참고로, '19년에 개발된 국가직무능력표준(NCS)은 반려견을 대상으로 함
- (자격범위) 훈련 목적, 난이도 등에 따라 결정할 필요
 - 기초훈련, 인명구조, 시각장애인 안내 및 공격성향 진단 등 훈련의 목적 및 훈련의 난이도(1·2·3급*)에 따라 자격의 범위가 결정
 - * 민간자격에서는 통상 급수(1~3급)로 난이도를 구분
- (응시자격) 전문성(특성화고, 대학 전공), 경력(관련 업종 근무 경력), 교육 유무 및 민간 자격 보유자(유사 훈련자격) 등에 대한 사전교육 또는 서면평가 면제 등 응시자격 부여 방안 검토 필요
- (검정기관 등) 자격 검정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시행기관 지정 및 자격검정 사전교육 대행기관 지정 필요성 등 검토
 - * 국가자격검정 시행기관은 통상적으로 자격시험 주무부처의 소속 또는 산하기관이나 한국산업인력공단(고용부)에 업무를 위탁

- (서비스업) 수분해장 등 동물장묘방식을 확대하고, 가정돌봄 서비스 (팻시터) 및 이동식 동물미용업 등록기준 명확화('20년)
 - 이동식 동물 장묘 방식 등도 타 법령* 조화 가능성 등 검토 추진('20년)
 - * 대기환경보존법, 장사 등에 관한 법률, 자동차관리법 등
- (인증제) 동물 관리수준, 서비스 품질 등이 우수한 영업자 인증방안을 유관단체와 협의(민간인증방안 검토)('20)

<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>

(단위 : 백만원)

| 구 분 | | '20 | '21 | '22 | '23 | '24 |
|-----|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
| 일 정 | ○ 국가자격 근거 마련 | | | | | |
| | ○ 학습모듈 개발 | | | | | |
| | ○ 자격검정 체계 마련 | | | | | |
| | ○ 운영 기관 지정 등 추진 | | | | | |
| | ○ 국가자격 시행 | | | | | |

3 유기·피학대 동물 보호 수준 제고

< 개선방향 >

◆ 지자체·사설동물보호시설의 관리를 강화하고, 지자체 동물구조·보호 전문성 제고를 통해 유기동물 등 보호 수준 제고

추진과제 3-1 사설보호소 관리제도 마련

< 주요 변경 사항 >

| | 현행 | 개선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신고제 | ▶ 관련 규정 없음 | ▶ 개체관리카드 작성, 동물 공고 등 의무화, 번식방지, 분노처리기준 등 마련 |
| 관리 개선 | ▶ 관련 규정·예산 없음 | ▶ 지자체에 사설보호소 관리 의무 부과, 사설보호소 환경 개선사업 예산 지원 |
| 분양 제한 | ▶ 관련 규정 미비(동물생산업, 동물판매업 등과 구분 곤란) | ▶ 사설보호소로 신고한 시설 외 동물 유상 분양 금지 |

- (필요성) 사설보호소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사설보호소에서 보호중인 유기동물 보호 수준 개선 및 입양을 활성화할 필요
- (추진방안) 사설동물보호소 신고제 도입 및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, 사설보호소 사육여건 개선 지원 추진
- (신고제 도입) 신고제를 도입하여 보호개체 관리의무 등 부여(22)
 - 개체관리카드 작성, 보호중인 동물 공고를 의무화*하고, 안락사 기준·번식 방지·분노 처리 기준 등도 적용
 - * 유기동물 등을 발견한 사설보호소는 우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고,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만 보호
 - 중장기적으로 시설·인력기준 등을 설정하고, 비영리단체·법인만 사설보호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제 전환 검토

- (관리개선) 광역시·도에 사설보호소 관리의무를 부과하고, 시·도에서 사설보호소 환경개선 사업* 추진 시 예산 지원('22)

* (예시) 기존 보호 중인 동물 개체관리카드 일제 작성, CCTV설치, 번식 방지(중성화, 암수 격리 공간 설치 등) 지원

- (분양제한) 사설동물보호소로 신고한 시설 외 동물 유상 분양* 금지('22)

* 현재 사설동물보호소로 알려진 시설이 유기동물을 타인에게 분양 시 보호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판매행위로 해석하고 있지 않음

- 유기동물 포획 및 판매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

※ 연간 15만원 이상의 판매에 대해 동물관련 영업자로 해석하는 「동물보호법 시행규칙」 입법예고 완료

<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>

(단위 : 백만원)

| 구 분 | | '20 | '21 | '22 | '23 | '24 |
|-----|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
| 일 정 | ○사설보호소 신고제 운영 | | | | | |
| | ○관리수준 개선 사업 추진 | | | | | |

추진과제 3-2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시설·인력 기준 개선

< 주요 변경 사항 >

| | 현 행 | 개 선 |
|-------|---|--|
| 기준 강화 | ▶ 보호공간 권장, 케이지 2단 이상 쌓기 가능, 속칭 뜯장 허용 ▶ 인력기준, 중성화, 동물등록 등 규정 미비 | ▶ 동물 당 필요 넓이 설정, 케이지를 2단 이상 쌓는 것 제한, 케이지 내 평판 설치 의무화 등 ▶ 보호두수 당 인력기준 마련 |
| 지정 취소 | ▶ 거짓 등의 방법으로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은 경우만 지정 취소 의무 | ▶ 보호비용 거짓 청구 경우, 동물학대, 자의적 안락사 등에는 반드시 지정 취소하도록 규정 |

- (필요성)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유실·유기동물 보호 여건을 개선하여 유실·유기동물 입양률을 제고할 필요

- (추진방안) 보호두수 당 인력기준, 시설 기준, 중성화·동물등록 의무화 등 준수 의무를 강화하고, 지정취소 요건 강화
- (시설·인력 기준 등) 정책연구용역('20)을 거쳐 기준 강화(안)을 마련하고, 단계적 적용('21~)
 - * 사설동물보호소 분뇨처리 기준 마련과 함께 추진

<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준수사항 강화(안)>

- ▶ (동물 마리당 공간) 시설의 가로 및 세로는 개의 몸길이의 약 2배가 될 수 있도록 하고, 천장은 개가 뒷발을 들고 일어났을 때 머리가 닿지 않을 정도로 설치('22)
- ▶ (케이지 기준) 케이지를 2단 이상으로 쌓는 것 제한(일시적으로 동물이 초과 수용되는 경우 제외), 동물이 쉴 수 있도록 케이지 내 평판 50% 이상 설치('22)
- ▶ (인력기준) 보호두수 50마리당 관리인력 1인*('22)
 - * 대만은 40마리/1명, 미국보호소수의사 연합은 32마리/1명
 - 진료 수의사, 포획인력 의무 고용하는 방안* 검토
 - * 환경부 야생동물구조센터는 센터 당 수의사 2명, 포획인력 8명 고용 의무화
- ▶ (입소절차) 입소시 (가칭)계류장 설치 및 계류기간 규정, 암·수 구획 보호 가능 여부, 동물의 성향 등에 따라 중성화 실시('21)
 - 유실·유기동물 관리수준 개선 사업*을 확대하여, 중성화 수술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 검토
 - * '18년부터 동물 입양시 동물등록비용, 중성화 수술 비용 등을 지원 중
- ▶ (퇴소절차) 재입양 되는 동물은 동물등록 후 분양('21)

- (지정취소) 보호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, 동물학대를 한 경우, 동물의 인도적 처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지정 취소*하도록 규정('21)
 - * 현재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
- (직영확대) (가칭)우수 동물보호센터 지정제*를 실시하고, 직영 동물보호센터 확충 정도를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 지표에 추가 협의
 - * 사업비용 인센티브 등 지원, 시범사업 실시 후 확대 검토

<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>

(단위 : 백만원)

| 구 분 | | '20 | '21 | '22 | '23 | '24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
| 일정 | ○관리수준 개선 연구용역 및 기준(안) 마련 | | | | | |
| | ○지정취소 요건 강화 | | | | | |
| | ○동물보호센터 입·퇴소 절차 강화 | | | | | |
| | ○동물보호센터 시설·인력 기준 강화 | | | | | |
| | ○직영 동물보호센터 확충 | | | | | |

추진과제 3-3 유기·피학대동물 구조 체계 개선

< 주요 변경 사항 >

| | 현 행 | 개 선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임의 구조 | ▶ 동물보호센터, 수의사 등에 대해서만 지자체 신고의무 부과 | ▶ 사설동물보호소 등에 대해서도 유기 동물 발견 시 지자체 신고의무 |
| 포획반 | ▶ 자율적 구성 | ▶ 소방서, 동물보호단체 등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한 전담 포획반 구성 지원 |
| 피학대 | ▶ 동물학대에 해당하는 경우만 지자체가 구조 | ▶ 동물학대가 의심되는 경우도 우선 구조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|

- (필요성) 유실·유기·피학대동물의 효과적인 구조 및 보호여건 마련을 위해 구조체계를 개선할 필요
- (추진방안) 사설보호소·일반인의 임의 구조 제한, 광역단위 포획반 구성 유도 및 피학대 동물구조 범위 확대 추진
 - (임의 구조 제한) 유기·유실동물 발견 시 지자체 신고의무를 사설동물보호소에 부과(22)하고 일반인에 대해서도 홍보 강화
 - * 「동물보호법」 제16조에 따라 동물보호단체, 수의사, 영업자 등은 유실·유기동물 발견 시 지자체에 신고토록 규정

○ (구조 활성화) 유실·유기동물 구조·보호비용 지원을 지속 확대*하는 한편, 광역 단위 포획반 구성 지원(’21)

* (현행) 구조·보호 마리당 예산 지원 → (개선안) 동물보호센터별 운영비(인건비 등) 지원

- 전담 포획반을 구성하여 관할 소방서, 동물보호단체 등과 협조체계를 구성하는 경우 사업비용 인센티브 제공 등 검토

* 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에 관할 소방서 등 관계기관 포함하고, 포획교육 및 장비 등 제공

○ (피학대)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피학대동물을 구조할 수 있도록 동물학대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격리 할 수 있도록 개선(’21)

* (현행) 법 제8조제2항(상해, 신체적 고통)에 해당하는 경우 격리 → (개선) 동물학대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경우 격리

○ (인수제)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지자체에 인도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인수제 법적 근거 마련(’21)

- 공격성, 소음 문제 등 상황으로 소유권을 포기하려는 자에 대한 훈련 상담(무료 인터넷 강의 개발), 책자 개발 등 지원방안 마련 검토

< 인수제 운영(안) >

- ▶ (인수 사유) 「병역법」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, 교도소·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, 부상으로 인해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(증명 서류 제출 의무화)
- ▶ (비용징수) 인수와 동시에 보호비용을 징수하도록 규정, 인수제 포기 관련 서식 마련, 세부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설정

<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>

(단위 : 백만원)

| 구 분 | | '20 | '21 | '22 | '23 | '24 |
|-----|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
| 일 정 | ○광역단위 포획반 운영 | | | | | |
| | ○피학대동물 구조범위 확대 | | | | | |
| | ○인수제 근거 마련 | | | | | |

추진과제 3-4 재난 발생 대응 역량 강화

< 주요 변경 사항 >

| | 현 행 | 개 선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가이드 라인 | ▶재난 관련 계획에 반려동물의 대피와 관련된 내용 미비 | ▶일반국민·지자체가 참고할 수 있는 대피가이드라인 우선 보급 ※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 추진 |

□ (필요성)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에 따라 재난 관련 법령 상 반려동물 등에 대한 대피, 구조에 대한 고려 필요

- ※ 해외사례 : (미국) 각 주가 사람과 동물을 함께 수용하는 긴급대피 계획 수립 시 FEMA(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)의 장이 대피시설 등에 대해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
 (일본) '16년 8월 환경성에서 「방재업무계획」에 동물에 관한 사항 마련

□ (추진방안) 동물 대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, 동물과 함께 대피할 수 있는 대피소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추진

○ (가이드라인) 일반인·지자체 대상 반려동물 동반 대피요령*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작('20)

* 사료, 동물용 의약품, 배설물 처리 도구, 이동용 케이지 마련 등

- 재난상황 시 지자체 대응요령을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등에 포함하는 방안 지속 협의

○ (동물 대피소 마련)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함께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 지정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 추진

- 우선, 반려동물과 동반하여 입장이 가능한 숙박시설, 반려동물을 일시적으로 맡길 수 있는 시설(위탁관리업 등) 정보 제공(※가이드라인에 포함)

- 재난상황 시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대피할 수 있는 시설 마련 의무를 「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」에 포함하는 방안 지속 협의

<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>

(단위 : 백만원)

| | 구 분 | '20 | '21 | '22 | '23 | '24 |
|-----|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
| 일 정 | ○가이드라인 보급 | | | | | |

4 농장동물 복지 개선

< 개선방향 >

◆ 사육부터 유통까지 전 단계에 걸쳐 농장동물 복지 수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점검 강화

추진과제 4-1 사육단계 동물복지 기준 개선

< 주요 변경 사항 >

| | 현 행 | 개 선 |
|-------|--|---|
| 임신돈 | ▶임신돈 고정틀 사육 기준 없음 | ▶교배 후 6주 이내 까지만 스톨 사육, 그 후 군사 공간 제공 의무화 |
| 털갈이 | ▶산란계 강제털갈이 제한 기준 없음 | ▶인위적인 급이·급수 제한을 통한 산란계 강제털갈이 금지 |
| 건강 점검 | ▶법적 의무사항 없음 ※ HACCP, 동물복지축산 인증은 점검·기록 의무 있음 | ▶매일 1회 이상 건강상태 점검·기록 의무 신설 |
| 약취 | ▶축사내 암모니아 농도 기준 없음 | ▶축사내 암모니아 농도를 25ppm 이하로 유지하도록 규정 |
| 조명 | ▶축사내 조명 기준 없음 | ▶적정 조도 및 조명시간을 규정 |
| 육계 깔짚 | ▶육계 깔짚 관리에 관한 규정 없음 | ▶깔짚을 정기적으로 교체 하도록 의무화 |
| 신체 훼손 | ▶돼지 신체 절단 기준 없음 | ▶돼지 송곳니 절치, 거세는 생후 7일 이내 수행 |

□ (필요성) 농장동물 복지 수준을 효과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모든 축사농가가 준수해야할 기준을 법제화할 필요

※ (해외사례) EU는 산란계 배터리 케이지 사육 금지('12년) 및 돼지 스톨 사육 제한('13년) 이행 완료, 미국(일부 주)·캐나다 등도 돼지 스톨 사육 제한 추진 중

□ (추진방안) 임신돈 스톨 사육 제한, 산란계 강제털갈이 금지 등 동물 복지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축산관행을 법령으로 제한('20년)

< 동물복지형 축산기준 적용 법령 및 처벌 등 >

| 구분 | 법령 | 처벌 | 유예 |
|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임신돈 고정틀 사육 제한 기간 군사공간 제공 의무 | 축산법 시행령 | 시정명령 | 10년 |
| 임신돈 고정틀 사육기간을 교배 후 6주 이내로 제한 산란계 강제 털갈이 금지 | 축산법 시행규칙 | 500만원 이하 과태료 | |
| 매일 1회 이상 점검 및 폐사·투약 기록 의무 | | |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|
| 축사 내 암모니아 농도를 25ppm이하로 유지 | | | |
| 육계, 돼지 적정 조도 및 조명시간 규정 | | | |
| 육계 농가 깔짚을 정기적으로 교체 | | | |
| 생후 7일 이내 돼지 송곳니 절치·거세 | | | |

* 시정명령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('20.1월부터 1,000만원 이하의 과태료)

○ '20년부터 적용하여 농가 동물복지 수준 개선 추진(※ 임신돈 스톨 사육제한은 신규농가는 즉시, 기존 농가는 10년 유예)

- 축사시설현대화 사업*, 농진청 연구사업**을 통해 동물복지기준에 따른 사양방식, 축사 시스템 개발 및 보급 추진('20~)

* (축사시설현대화) 동물복지 축사표준설계도 개발 동물복지형 전환 농가 예산 우선·우대 지원('18)

** (농진청) 임신돈 군사사육 방식 연구('19~'21), 육계 동물복지를 위한 깔짚 교체 주기('20~'22) 등

○ 산란계 배터리 케이지 사육 방식 전환을 위한 로드맵 마련('21년)

- 해외 사례, 전환에 따른 농가 영향 분석 등을 거쳐 관계법령 개선 및 농가 지원 방안을 담은 중장기 산란계 배터리 케이지 전환 로드맵 수립

<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>

(단위 : 백만원)

| 구분 | | '20 | '21 | '22 | '23 | '24 |
|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
| 일정 | ○사육단계 보편적 기준 적용 | | | | | |
| | ○배터리케이지 전환 로드맵 마련 | | | | | |
| | ○임신돈 군사사육 방식 연구 | | | | | |
| | ○육계 깔짚 교체주기 연구 | | | | | |

추진과제 4-2 운송·도살 단계 동물복지 기준 구체화

< 주요 변경 사항 >

| | 현 행 | ⇒ | 개 선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도축· 운송 | ▶운송용 우리를 던지는 행위, 전기봉 사용 행위 외 처벌 없음 | ⇒ | ▶미준수 시 처벌이 되는 행위 구체화 |

□ (필요성) 농장동물 생애주기 전반의 동물복지 수준 제고를 위해 운송·도축 단계에 대한 동물복지 관리 필요

- * (해외사례, EU) 장거리 운송에 따른 휴식 및 급이·급수 기준 준수 의무화, 도축장내 모니터링 시설 설치·운영 의무화 등
- 위반에 따른 처벌규정을 각 회원국에서 마련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명시

□ (추진방안) 부화장, 도축·운송과정에 대한 실태조사·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, 동물복지 기준을 구체화하고, 제도 개선 추진

- (실태조사) 부화장, 도축장, 운송차량 실태 및 관리자 인식조사 등을 거쳐 우리나라 해당시설 동물복지 수준을 우선 파악('20년)
- (기준마련) EU 등 선진국 기준과 우리나라 실태조사 결과 등을 비교하여, 부적절한 방식을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기준 마련('21년)

<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>

| 구 분 | | '20 | '21 | '22 | '23 | '24 |
|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
| 일 정 | ○ 실태조사 추진 | | | | | |
| | ○ 운송·도축 기준 마련 | | | | | |

추진과제 4-3 축산농가 동물복지 의무교육 확대 및 점검 강화

< 주요 변경 사항 >

| | 현 행 | | 개 선 |
|----|---|---|---|
| 교육 | ▶ 허가농가 대상 6시간/년 의무 교육 - 동물복지 관련 교육 1시간 포함 | | ▶ 동물복지기준 관련 교육시간 확충(현행 1시간 → 개선 2시간) |
| 점검 | ▶ 「축산법」상 허가·등록 농가를 지자체에서 1회/2년 점검 ▶ 시·도에서 지정한 검사관이 도축장 등의 준수사항을 점검 | ⇒ | ▶ 농가 점검 주기를 매년 1회로 강화 ▶ 위생점검 시 동물복지기준 이행 여부도 점검하고, 관리자 교육 실시 |

- (필요성) 농가 등의 동물복지 기준 준수 이행 동력 확보 필요
- (추진방안) 동물복지기준에 대한 농가 교육과 점검을 강화
 - (교육강화) 축산 허가·등록 농가 대상 교육에 농장동물 복지 수준 제고 **교육 확대**(현행 1시간 → 개선 2시간) 및 **내실화 추진**('21년)
 - * 축산 허가(1년마다)·등록(2년마다) 농가 대상 6시간 교육을 의무화 하고 있고, 동물복지형 축산 및 사육 방식 교육을 1시간 배정
 - (농가점검) 축산업 허가·등록 농가 **준수사항 점검을 매년**(현행 2년) 추진('20)
 - 축산농가 점검권한 위탁 기관에 축산환경관리원을 추가*하고, 매년 축산업 허가·등록 농가 준수사항을 점검하도록 규정('20)
 - * (현행) 축산물품질평가원,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
 - (도축장 점검) 도축장 내 **CCTV 설치를 의무화**하고, 점검 인력(광역시도,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)을 활용하여 **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**('22)

<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>

(단위 : 백만원)

| 구 분 | | '20 | '21 | '22 | '23 | '24 |
|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
| 일 정 | ○ 교육 프로그램 개발 | | | | | |
| | ○ 교육 체계 개선 | | | | | |
| | ○ 교육 확대 시행 | | | | | |
| | ○ 도축장 CCTV 설치 | | | | | |

추진과제 4-4 동물복지축산 인증 고도화

< 주요 변경 사항 >

| | 현 행 | ⇒ | 개 선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|
| 대상 | ▶ 농가 | | ▶ 생산·제조·가공 하는 자 포함 |
| 체계 | ▶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인증 및 사후관리 | ⇒ | ▶ 공공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 |
| 지원 | ▶ 지원 예산 없음 | | ▶ 컨설팅, 시설 지원 추진 |

□ (필요성) **현행 인증체계는 인증의 안정적인 관리 및 활성화가 어려운 초기단계이므로 인증체계를 보다 고도화할 필요**

※ (해외사례) 해외(대다수 민간인증)의 경우 마요네즈 등 다양한 제품에 축산물 함량에 따라 인증표시 차별화, 인증 난이도에 따라 농장 인증을 단계화

□ (추진방안) **제조·가공 시설 인증을 도입하고, 인증체계를 인정·인증기관 체계로 개편하는 등 인증 서비스 및 관리를 고도화**

○ (인증체계) 공공기관 등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인증·사후 관리, 검역본부는 인증기관 관리, 심사원 교육체계 운영 등 수행(21년)

○ (인증대상) 현행 축산농장 단위 인증을 「축산물위생관리법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축산물*을 생산·제조·가공하는 자로 확대(23년)

* 식용란·알가공품·식육·포장육·식육가공품·원유·유가공품 등

○ (인증 차등화) 농가 인증 참여 유도를 위해 사육관리 의무가 보다 **완화된 인증 단계 도입, 인증 난이도에 따라 인증표시를 차등화** 하는 방안 검토(20)

※ 차별화된 인증표시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, 기존 인증농가에 대한 영향 등 병행 검토

○ (관리강화) 인증 축산물 원재료 함량 기준에 따라 인증마크·'동물복지' 용어 사용 기준* 등을 마련하고, 불시점검·인증 갱신제 도입(23년)

* (표시안) 원재료의 95% 인증 축산물일 경우에만 인증마크 및 '동물복지' 용어 허용, 70~95%일 경우 주 표시면이 아닌 곳에 '동물복지' 용어 허용

- 정기점검 외 불시점검을 매년 하도록 하고, 인증 갱신 의무(매 3년) 부과

○ (농가지원) 동물복지 인증농가 대상 사육방식 개선 및 판로확보를 위한 컨설팅 등을 추진(20년~)하고, 시설개선 지원 방안도 마련

<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>

(단위 : 백만원)

| 구 분 | | '20 | '21 | '22 | '23 | '24 |
|-----|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
| 일 정 | ○인증제 개편(제도개선) | | | | | |
| | ○인증기관 지정 및 시행 | | | | | |
| | ○인증대상 확대 | | | | | |
| | ○사양방식·판로확보 컨설팅 | | | | | |

추진과제 4-5 말·축제 이용 동물 복지 가이드라인 마련

< 주요 변경 사항 >

| | 현 행 | 개 선 |
|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경주마 | ▶마사회에서 말복지위원회 운영 | ▶말복지위원회에 동물보호단체 참여 |
| 소싸움 | ▶동물보호·복지 관리 방안 없음 | ▶동물복지 가이드라인 마련 |

- (필요성) 경주마, 소싸움, 축제 이용 동물에 대한 동물보호·복지 기준을 마련하여 불필요한 고통을 최소화 할 필요
- (추진방안) 경주마, 소싸움, 축제 등에 활용되는 동물에게 제공해야할 복지수준을 가이드라인 제공을 통해 정립
 - (경주마) 마사회 말복지위원회*에 동물보호단체를 참여토록 하여 말복지 가이드라인 등 관련 정책에 동물보호단체 의견 반영 여건 마련('20)
 - * 말산업 분야의 말복지 정책 수립을 위한 말복지위원회 자문기구
 - (소싸움·축제) 싸움소, 축제 활용 동물에 대한 동물복지 가이드라인을 해당 지자체에서 마련하고, 동물복지위원회를 통해 심의('21년)
 - 소싸움 경기, 축제 등에 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을 배치하고,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지도·점검하여 부적절한 동물관리 최소화

<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>

| 구 분 | | '20 | '21 | '22 | '23 | '24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
| 일 정 | ○싸움소, 축제활용 동물 지자체 가이드라인 개발 | | | | | |
| | - 가이드라인 시행 | | | | | |

5 동물실험 윤리성 강화

< 개선방향 >

- ◆ 동물실험시행기관 준수사항,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통해 동물실험 윤리성 제고

추진과제 5-1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·감독 기능 강화

< 주요 변경 사항 >

| | 현 행 | 개 선 |
|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심의 | ▶ 3~15인으로 위원회를 구성 ▶ 동물실험 전 심의만 범으로 규정 | ▶ 위원제한 폐지, 사전심의 허용 ▶ 변경심의 의무화 |
| 감독 | ▶ 감독의 구체적인 방법 등 미규정 | ▶ 실험 심의 이후 감독을 실시 근거 마련 |

- (필요성)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동물실험을 효과적으로 지도·감독할 수 있는 여건 마련 필요
- (추진방안) 심의위원 수 제한 폐지, 전문위원 지정제, 위원 보수 교육, 중요사항 변경*시 변경심의 의무화 등 추진
 - (위원수 개선) 심의위원 수 제한을 폐지(현행 15명)하고, 전문위원 지정제(20), 위원 보수교육(21) 등을 제도화하여 심의 기능 강화
 - 위원 수 제한을 폐지하고, 전문 분야별 위원을 지정하여 전문 위원이 정규 심의 전 사전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
 - * 중요한 사안이 아닌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심의를 거치면 전체 윤리위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규정
 - 동물실험심의의 취지, 절차,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한 윤리위원의 이해도제고를 위해 관련 교육을 정기적(연 1회)으로 수강하도록 규정
 - 심의 진행 가능 성원* 중 이해관계가 없는 위원의 참여 비중 확대 방안 검토
 - * (현행) 전체 심의위원 중 과반수가 참여하고,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1인 이상 심의에 참여해야 심의 가능

○ (심의범위 확대) 중요사항 변경*시 변경 심의를 의무화하고, 위반시 처벌**('21)

* (중요사항 변경 검토안) 연구자 책임자 변경, 실험동물 종 변경 또는 50% 이상 증가, 연구 장소 변경, 고통등급 변경 등

** (위반시 처벌)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○ (심의 후 감독) 기 심의한 실험 진행 상황에 대해 정기·불시 점검을 의무화하고, 심의내용을 위반한 경우 실험을 중지 시킬 수 있는 권한 부여('21)

- 심의한 실험 진행 상황에 대한 정기·불시 점검 의무 부과

- 실험이 승인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실험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, 윤리위 변경 승인 이전까지는 실험을 재개할 수 없도록 함

※ 실험을 중단하는 것이 오히려 동물의 복지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연구자 소명과 윤리위 승인으로 실험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

○ (가이드라인 개선) 제도 변경 사항에 따른 구체적인 심의·감독 요령을 담은 가이드라인 개정안 마련 추진('20)

※ 가이드라인에 불시 PAM 방법, 해외사례, 정부기관의 점검 사례 등을 제시하여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함

<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>

(단위 : 백만원)

| 구 분 | | '20 | '21 | '22 | '23 | '24 |
|-----|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
| 일 정 | ○윤리위 위원수 폐지 | | | | | |
| | ○윤리위 보수교육 의무화 | | | | | |
| | ○변경심의 의무화 | | | | | |
| | ○심의 후 감독 근거 시행 | | | | | |
| | ○가이드라인 개발 | | | | | |

추진과제 5-2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준수사항·처벌 강화

< 주요 변경 사항 >

| | 현 행 | | 개 선 |
|---------|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윤리위 독립성 | ▶ 구체적인 인력·예산 지원 근거 없음 ▶ 위원해촉금지 규정 부재 | ⇒ | ▶ 행정전문인력을 두도록 규정 ▶ 위원해촉금지 규정 마련 |
| 통지 의무 | ▶ 실험 심의 현황, 사용 동물 마리수 등 통지 | | ▶ 동물공급 출처(사역동물 여부 등)까지 제출하도록 내용 확대 |
| 교육 | ▶ 연구자 등에 대한 법적 교육의무 없음 | | ▶ 연구자 등에 대해 의무교육 추진 |
| 처벌 | ▶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| | ▶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|

- (필요성)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활동 보장 등을 위해 동물실험시행기관 의무를 강화할 필요
- (추진방안) 윤리위 행정 전담인력 채용 의무화, 윤리위 운영실적 통지내용 확대 등 의무를 강화하고 위반 시 처벌 강화 추진
 - (행정지원인력) 동물실험계획 사전검토 등 심의 지원, 신규 위원 교육 등을 지원하는 행정 전담인력 채용 의무화(‘21)
 - * (추진방안)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지침 등 가이드라인을 통해 우선 적용하고, 추후 법제화 검토
 - (처벌강화) 심의를 받지 않고 실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강화* 하고(‘21), 동물실험을 중지하도록 하는 방안**도 검토
 - * (현행)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→ (개선안)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 - ** (방안) 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, 점검 거부·방해, 개선명령 미이행 시 기관의 동물실험을 중지 명령을 부과
 - 동물실험 중지가 동물의 복지 훼손 등 기타 공익을 해할 경우 동물실험 중지 기간만큼의 과징금 부과를 하는 방안을 검토
 - ※ 유사법률인 「실험동물법」, 「생명윤리법」 등은 감독청이 실험시설의 운영정지 명령 부과 권한을 가지고 있음

- (연구자 교육) 실험동물복지,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을 연구자 등*에게 교육할 의무 부과('21)
 - * 연구자, 동물실험시행기관의 관리자, 사육자 등 동물실험관련 종사자
- (윤리위 운영실적 통지내용 확대)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사용한 실험동물의 출처, 사역동물 사용 실적 통지의무 신설('20)
 - 실험동물 출처 정보를 검토하여, 실험동물공급업자를 통해서만 동물을 공급받도록 하는 방안 검토
- (임의 위원 해촉 금지)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위원의 임기를 보장* 하도록 하고,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(500만원 이하) 부과('22)
 - * 사망,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, 고의로 6개월 이상 실험심의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등 해촉 가능 사유 마련

<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>

| 구 분 | | '20 | '21 | '22 | '23 | '24 |
|-----|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
| 일 정 | ○행정지원인력 | | | | | |
| | ○통지내용 확대 | | | | | |
| | ○임의 위원 해촉 금지 | | | | | |

추진과제 5-3 사역동물 실험 관리 개선

< 주요 변경 사항 >

| | 현 행 | | 개 선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|
| 요건 | ▶ 실험을 허용하는 요건과 절차가 비교적 넓음 | ⇒ | ▶ 요건을 강화, 사역동물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고 윤리위가 승인한 경우만 허용 |
| 심의 | ▶ 다른 동물실험과 절차가 같음 | | ▶ 제3의 기관에서 심의토록 규정 |

□ (필요성) 사역동물 실험을 원칙 금지하는 법의 취지를 명확화 하여 사역동물 실험을 제한할 필요

※ 유럽연합 지침, 미국·영국·독일 등의 실험동물 관련 법에서 사역동물에 대한 실험을 금지하는 사례는 확인되지 않음

□ (추진방안) 사역동물 대상 실험목적 강화, 실험 심의방식 변경

○ (실험요건 강화) 사역동물 대상 동물실험 요건을 강화*('20)

* (현행) 인수공통전염병의 진단, 치료 또는 연구, 방역 목적 실험, 해당 동물 또는 동물종의 생태, 습성 등에 관한 과학적 연구를 위하여 실험 → (개선) 사역견 선발방식, 효율적인 훈련방식에 관한 연구로서 동물실험윤리 위원회가 사역동물로 실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제한

○ (처벌강화) 사역동물에 대한 불법 실험이 일어난 경우 처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,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(현행 300만원 이하의 벌금)('22)

○ (심의방식) 사역동물에 대한 심의를 제3의 기관*에서 심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 추진('23)

* 농림축산검역본부 또는 별도 기관을 설립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 검토

○ (사역동물 실태 관리) 농식품부에서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사역동물의 복지 실태를 파악 및 공개 추진('21)

- 각 부처(우리부, 경찰청, 국방부, 관세청, 소방청 등)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역동물의 수와 관리사항을 우리부가 조사·공개하도록 함

<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>

| 구 분 | | '20 | '21 | '22 | '23 | '24 |
|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
| 일 정 | ○사역동물실험목적 강화 | | | | | |
| | ○불법 사역동물 실험 처벌 강화 | | | | | |
| | ○사역동물 실태 관리 | | | | | |

추진과제 5-4 윤리적 동물실험 정보 보급 체계 구축

< 주요 변경 사항 >

| | 현 행 | ⇒ | 개 선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정보 허브 | ▶ 동물실험 윤리관련 정보 제공 허브 부족 | ⇒ | ▶ (가칭)한국3R정보센터 구축 ▶ 윤리위원 풀 구축 |

- (필요성) 동물대체시험법 등 윤리적 동물실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 마련 필요
- (추진방안) 대체시험법, 동물실험윤리위원 Pool 정보 등을 취합하여 제공하는 온라인 포털 구축
 - (대체시험) 대체시험법 여부를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대체 시험법 정보를 취합 및 게재하는 온라인 포털 구축(23)
 - 각 법률에 대체시험법이 반영* 되도록 관계부처 협의 지속 추진
 - * 「농약관리법」 「식품의약품검사법」 등에 대체시험법 적용 권고 조항 포함
 - 「화학물질등록평가법」은 척추동물대체시험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(18.4월)
 - (위원 인력 Pool 마련)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원활한 구성 지원을 위해 외부위원 전문가의 pool을 우선 구성(20)하고, 온라인 포털에 DB화(23)
 -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속해있지 않은 외부위원 전문가의 풀을 관리하고, 인력 풀에 대한 지속 교육 시행(20)

<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>

| | 구 분 | '20 | '21 | '22 | '23 | '24 |
|-----|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
| 일 정 | ○ 온라인 포털 구축 | | | | | |
| | ○ 위원 인력 풀 마련 | | | | | |

6 동물보호·복지 거버넌스 강화

< 개선방향 >

◆ 동물복지위원회 기능 강화, 정책 지원 전문기관 구축, 통계 개선을 통해 동물보호·복지 거버넌스 확립

추진과제 6-1 동물복지위원회 정책 심의 기능 강화

< 주요 변경 사항 >

| 현 행 | | ⇒ | 개 선 | |
|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위원장 | ▶민간 위원 중 호선 | | ▶농식품부 차관, 민간위원 호선 위원 공동 위원장 | |
| 위원수 | ▶10명 이내, 민간 전문가 | ▶30명 이내, 관계부처 참여 | | |
| 분과위 | ▶분과위 없음 | ▶분야별 분과 구성 | | |
| 기능 | ▶자문 | ▶심의 기능 추가 ▶관계부처 업무를 자문범위에 명확화 | | |

- (필요성) 동물보호·복지관련 부처 간 협업 활성화를 위해 동물 보호·복지 관련 심의 총괄 기구 필요
- (추진방안) 농식품부 차관·민간위원 공동위원장으로 구성하고 분과위 운영을 위해 위원수 확대, 자문 범위 확대, 심의 기능 추가(21)
 - (위원장) 차관급 자문위원회로 격상하고, 위원장은 농식품부 차관과 민간위원 중 호선된 위원을 각각 공동 위원장으로 구성
 - (분과위) 소유자 인식개선 등 4개 분과*로 구성, 분야별로 관계부처를 포함한 7명 내외로 구성하여 당연직 위원장 포함 총 30명 이내로 구성
 - * 분과(안) : ① 국민인식 개선, ② 동물연관 산업, ③동물실험, ④농장동물
 - (기능) 특정 사안은 심의*토록하고 타부처 소관 업무(야생·수생·실험동물 등)를 자문 범위에 포함
 - * (심의 안)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, 맹견의 범위 조정, 동물복지축산 인증 기준 변경, 동물복지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 등

<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>

| 구 분 | | '20 | '21 | '22 | '23 | '24 |
|-----|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
| 일 정 | ○동물보호법령 개정 | | | | | |
| | ○위원회 구성 및 운영 | | | | | |

추진과제 6-2 동물보호·복지 R&D 기획단 운영

< 주요 변경 사항 >

| | 현 행 | ⇒ | 개 선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R&D | ▶ 농진청, 검역본부에서 자체계획 수립 및 운영 | ⇒ | ▶ 인문·사회, 과학기술 분야 R&D 기획단 운영 |

□ (필요성) 동물보호·복지 관련 체계적인 연구개발을 위해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, 신규과제를 발굴할 수 있는 전문가 조직 필요

※ (해외사례) 네덜란드의 경우 와게닝겐 대학 등에서 동물보호·복지 관련 연구를 하고 있으며, 관련 결과를 토대로 정부에서 동물복지 기준 등 마련

□ (추진방안) 동물보호·복지 관련 인문·사회, 과학기술 분야 R&D 기획단 구성(‘20)

○ 분야별 관계기관, 대학교수, 관련단체가 참여하는 R&D 기획단을 구성하고, 연구에 대한 로드맵 설정 및 신규 과제를 발굴

- 과학기술분야는 우리부·농진청 연구개발 사업 예산에 반영

- 인문·사회분야는 ‘동물보호·복지 사회·문화 연구 포럼’ 운영 예산을 확보하여 연구 과제 발굴, 후속 조치 검토

<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>

(단위 : 백만원)

| | 구 분 | '20 | '21 | '22 | '23 | '24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
| 일 정 | ○기획단 구성 | ■ | | | | |
| | ○연구개발 로드맵 마련 | ■ | | | | |
| | ○신규과제 도출 | ■ | ■ | ■ | ■ | ■ |
| | ○사회·문화 연구 포럼 운영 | | ■ | ■ | ■ | ■ |

추진과제 6-3 동물보호·복지 통계·실태조사 개선

< 주요 변경 사항 >

| | 현 행 | ⇒ | 개 선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실태 조사 | ▶ 검역본부에서 지자체 행정조사 결과 취합 | | ▶ 현장 실태조사를 정례적으로 추진 |
| 총조사 | ▶ 반려동물 사육 여부 조사 없음 | | ▶ 조사범위에 반려동물 사육 여부 등 포함 |

- (필요성) 동물보호·복지 관련 통계 신뢰도를 확보하여 정책 및 제도의 정밀도를 제고할 필요
- (추진방안) 현장 실태조사를 분야별로 정례적·체계적으로 추진 하고, 인구·주택 총조사(20)에 반려동물 사육 여부 조사 추진
 - (실태조사) 국민 의식, 동물보호센터, 동물관련 영업자, 축산분야 등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정례적으로 추진하여 정책 개선 방향 도출(20)
 - 국민 의식 조사는 매년, 동물보호센터·영업자·축산분야, 길고양이 개체수 평가 분야는 정기적으로 수행
 - (총조사) 통계청과 협의를 통해 '20년 인구·주택 총조사 조사 항목에 반려동물 사육 여부, 마릿수 등을 포함(20)

<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>

(단위 : 백만원)

| 구 분 | | '20 | '21 | '22 | '23 | '24 |
|-----|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
| 일정 | ○ 국민인식조사 | | | | | |
| | ○ 동물보호센터 조사 | | | | | |
| | ○ 길고양이 현황 조사 | | | | | |
| | ○ 축산분야 실태 조사 | | | | | |
| | ○ 반려동물 영업자 조사 | | | | | |

추진과제 6-4 지자체 동물보호·복지 정책 추진 동력 개선

| | 현 행 | ⇒ | 개 선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|
| 위원회 | ○ 동물복지위원회 운영 의무 없음 | | ○ 광역시도 동물복지위원회 운영 의무화 |
| 평가 | ○ 행안부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동물등록 마릿수 포함 | | ○ 현장 지도·점검 실적, 유기동물 분양 실적 등 포함 |
| 지원 인력 | ○ 동물복지 명예감시원 제도 운영 | | ○ 명예감시원 활동 계획 체계화 ○ 공중방역수의사 업무에 동물보호·복지 업무 추가 |

□ 지역단위 동물보호·복지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해 **동물복지위원회, 동물보호전문기관**을 설치하고, 경찰 등 유관기관 협업 강화

○ (광역시도 동물복지위원회) 지역 의견이 효과적으로 수렴 및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**광역시도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의무화**(‘21)

* 서울시,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는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

- 지역 경찰청, 소방청 등을 위원으로 참여토록 하여 **개 물림사고, 유기·피학대동물 구조** 등 동물관련 지역 현안 공동 대응

○ (인력보강) 행안부 지자체 합동 평가 지표에 **현장 지도·점검 실적, 유기동물 분양실적** 등을 포함하여 인력 보강 유도(‘21)

- 공중방역수의사 등 지자체 동물 관련 전문 인력을 동물 구조·보호, 영업자 지도·점검 등 지자체 동물보호업무 지원하는 방안 관계부처 협의

○ (명예감시원) 동물보호 **명예감시원 활동 연간계획***을 수립하여 활동을 체계화하고, 계획을 토대로 **명예감시원 활동 수당 확보**** 및 지원(‘20)

* 대다수 지자체에서 명예감시원 활용에 대한 체계적 계획 없이 현장 홍보·캠페인 등 특정 사안 발생 시 명예감시원 활용

** 검역본부에서 지자체 명예감시원 활동 내역을 근거로 활동 수당 지급 중

<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>

(단위 : 백만원)

| | 구 분 | '20 | '21 | '22 | '23 | '24 |
|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
| 일 정 | ○동물복지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| | | | | |
| | ○자자체 평가지표 개선 및 적용 | | | | | |

추진과제 6-5 동물보호·복지 전문기관 구축

| | 현 행 | ⇒ | 개 선 |
|----------|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전문 기관 | ○ 없음 | | ○ 중앙·지역 동물보호·복지 전문 기관 설치 |

- (필요성) 동물보호·복지 정책집행의 효과 제고를 위해 현장 조사 및 민원대응 등을 지원하는 전문조직 구축 필요

※ (국내 사례) 「아동복지법」에서는 아동복지 관련 정책 및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는 ‘아동권리보장원’, 지자체는 ‘아동보호전문기관’을 설립·설치하도록 규정

- (추진방안) 동물보호·복지 관련 조사·점검, 현장 민원 대응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 설립 또는 지정 추진(23)

< 전문기관 역할(안) >

| 중앙 전문기관 | 지역 전문기관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① 전국 단위 지도·점검 계획 수립 및 현장 실태조사 수행 | ① 동물관련 민원·신고 대응 및 유관기관 협조 체계 운영 |
| ② 중앙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, 대체 시험법 보급 등 | ② 맹견 판정 및 공격성 평가 |
| ③ 동물 생산·판매업 유통 동물 이력 관리 | ③ 지역 동물보호시설, 영업장 지도·점검 |
| ④ 반려동물 관련 국가자격제도 운영 등 | ④ 동물 소유자등 대상 현장 교육 과정 운영 |
| ⑤ 동물복지축산 인증제 운영 | ⑤ 동물학대 격리 여부 평가 위원회 운영 |

- 효과적인 현장대응 및 새롭게 신설되는 업무*추진을 위한 적정 인력과 조직형태를 산출(20, 연구용역)하고, 관계기관 협의

* 위험한 개 판정, 반려동물 이력제, 중앙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등

-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, 동물복지 기금 도입 등을 검토하여 지자체 동물보호센터, 전문기관 등의 설치·운영비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(22)

<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>

(단위 : 백만원)

| 구 분 | | '20 | '21 | '22 | '23 | '24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
| 일 정 | ○전문기관 설치 연구용역 | | | | | |
| | ○전문기관 설치 근거, 세부기준 마련 | | | | | |
| | ○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| | | | | |